

<기본서 추록>

[페이지는 2024년도 판을 기준 표시] [추가/변경된 부분에 밑줄표시함]

[p.5~p.6] III. 본점의 등기사항과 지점의 등기사항

->

<전부삭제>

[p.11~p.12] II. 등기소의 관할 /

<전부교체>

->

## II. 등기소의 관할

상업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을 말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또는 등기소(이를 통칭하여 ‘등기소’라 함)에서 담당한다(상등 4조 1항; 2025. 1. 31.부터 시행).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상업등기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는데(상등 5조),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등기소가 관할등기소가 된다. 현재 동일상호 판단의 편의와 상업등기의 전문화 등을 위해서 하나의 시 내에 여러 개의 등기소가 있을 경우, 다른 등기소의 상업등기사무를 그 중 하나의 등기소에 위임하여 1곳에서 상업등기사무를 처리하고 있다(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4조).<sup>1)</sup>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의 경우 별도의 위임이 없어 그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함과 대조를 이룬다.

당사자는 위의 기준으로 정하여지는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해당 등기신청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업등기법 또는 상업등기규칙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상등 4조 2항; 2025. 1. 31.부터 시행; 예를 들어 회사간 흡수합병의 등기에서 존속회사의 변경등기신청과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신청은 존속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하는데, 상업등기법 64조에 따라 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와 존속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가 다를 경우 동시신청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도 존속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어느 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등기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상등 6조. ‘관할변경 또는 관할전속’이라 함).

재난발생 등으로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그 등기소를 ‘**비상등기소**’라 함)에 대법원장은 기간을 정하여 **비상등기소**의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상등 7조 1항; 2025. 1. 31.부터 시행).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지명령의 권한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하고**, 처분명령의 권한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상등 7조 2항; 상등규 7조의2, 7조의3; 2025. 1. 31.부터 시행).

[p.13~p.14] 2. 등기기록의 양식 /

<전부 교체>

->

## 2. 등기기록의 양식

하나의 회사·합자조합·상호, 한 사람의 미성년자·법정대리인·지배인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등기기록’이라 하고(상등 2조 4호), 등기기록의 양식은 그 종류에 따라 상업등기규칙 별지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5까지의 양식으로 정하여져 있다(상등규 13조 1항; 2025. 1. 31.부터 시행).

위에서 상업등기규칙 별지 제9호의2부터 제9호의5까지의 양식은 외국회사의 영업소 등기기록 양식이다.

[p.14] 3. 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 / (1) 개념 및 통상의 폐쇄·부활 / 3,4번째 단락 /

개인 상인의 등기기록은 ① 상호폐지의 등기, ② 상호의 말소등기, ③ 무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소멸의 등기, ④ 영업주가 선임한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의 등기, ⑤ 상호의 등기를 한 자, 무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구 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 이전의 등기(중전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지배인을 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구 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 이전의 등기(중전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그 지배인을 둔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폐쇄한다(상등규 89조).

회사나 합자조합의 등기기록은 ①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구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 ② 지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구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하는 지점이전등기(구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본점 또는 다른 지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지점폐지등기(해당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본점 또는 다른 지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청산종결의 등기, ⑤ 합병, 합병무효나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폐쇄한다(상등규 116조 1항).

->

개인 상인의 등기기록은 ① 상호폐지의 등기, ② 상호의 말소등기, ③ 무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소멸의 등기, ④ 영업주가 선임한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의 등기, ⑤ 상호의 등기를 한 자, 무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중전 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 이전의 등기(중전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지배인을 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중전 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 이전의 등기(중전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그 지배인을 둔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폐쇄한다(상등규 89조).

회사나 합자조합의 등기기록은 ① 청산종결의 등기, ② 합병·합병무효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폐쇄한다(상등규 116조 1항; 2025. 1. 31.부터 시행).

[p.15] (2) 특수한 경우: 해산(간주) 회사 등기기록의 폐쇄·부활 / 4번째 단락 /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해산의 등기를 한 후 또는 해산된 것으로 된 후 10년이  
지난 회사 등의 등기기록을 폐쇄·부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뜻을 지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지점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  
기관은 해당 지점등기기록을 폐쇄·부활하여야 한다(상등규 59조 3항).

->

<전부삭제>

[p.18] 3. 작성요령 / 제목 / <예규번호 수정>

등기예규 1763호 -> 등기예규 1776호

[p.19] 1. 유인창구 발급의 경우 / 2번째 단락 / <예규번호 수정>

등기예규 1763호 -> 등기예규 1776호

[p.19] 1. 유인창구 발급의 경우 / 3번째 단락 / <예규번호 수정>

등기예규 1761호 -> 등기예규 1774호

[p.19] 2. 무인발급기와 인터넷등기소에 의한 발급의 경우 / 3번째 단락 /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서면으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 뿐만 아  
니라 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도 가능하다(등기예규 1763호 5.  
가.).

->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는 인터넷등기소 애플리케이션에 의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전자등기사항증명서'라 함)로 발급할 수 있는데, 전자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말소사항 포함·현재 유효사항·폐쇄사항)만 발급이 가능하다(전부증명서만 가능하고  
일부증명서는 불가함; 등기예규 1776호 5. 가.).

[p.20] 1. 개설 / 1번째 단락 / <예규번호 수정>

등기예규 1763호 -> 등기예규 1776호

[p.20] 2. 발급신청 / 1번째 단락 / <예규번호 수정>

등기예규 1763호 -> 등기예규 1776호

[p.20] 4. 등·초본의 작성 및 교부 / 2번째 단락 / <예규번호 수정>  
등기예규 1763호 -> 등기예규 1776호

[p.21] 1. 발급확인번호에 의한 확인 / 1번째 단락 / <예규번호 수정>  
등기예규 1761호 -> 등기예규 1774호

[p.21] 2. 2차원 바코드정보의 복원에 의한 확인 / 1번째 단락 / <예규번호 수정>  
등기예규 1761호 -> 등기예규 1774호

[p.21] 예규 / 박스안 /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2.12.14 [등기예규 제1763호]

->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3.10.13 [등기예규 제1776호]

[p.24~25] 예규 박스안 /

5.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

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 1) 서면으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는 별지 제3-17-가호 양식(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시)과 같이 ‘제출용’ 임을 표시하고,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한다.
- 2) 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는 별지 제3-17호-나호 양식(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시)과 같이 작성한다.
- 3)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은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3. 다. 3)과 동일한 조치를, 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3. 다. 3) (ㄱ)과 동일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등기기록의 열람

- 1)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기록(전산폐쇄등기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나.”에서 같다)의 열람은 컴퓨터모니터 화면으로 보는 방식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양식의 서면으로 등기사항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열람을 위하여 출력하는 서면에는 열람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2) 등기신청사건 처리 중인 등기기록에 대하여 열람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사건 처리 중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고 열람하도록 한다.

->

5.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

가. 발급가능한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1) 인터넷등기소에 의하여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등기사항일부증명서(폐쇄사항)로 한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는 인터넷등기소 애플리케이션에 의하여 발급하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로 한다.

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1) 서면으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는 별지 제3-17-가호 양식(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시)과 같이 ‘제출용’임을 표시하고,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한다.

2) 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는 별지 제3-17호-나호 양식(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시)과 같이 작성한다.

3)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은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3. 다. 3)과 동일한 조치를, 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3. 다. 3) (ㄱ)과 동일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등기기록의 열람

1)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기록(전산폐쇄등기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나.”에서 같다)의 열람은 컴퓨터모니터 화면으로 보는 방식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양식의 서면으로 등기사항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열람을 위하여 출력하는 서면에는 열람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등기신청사건 처리 중인 등기기록에 대하여 열람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사건 처리 중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고 열람하도록 한다.

[p.30] 2. 열람방법 / (1) 전산등기부의 열람 / 3번째 단락 / <예규번호 수정>

등기예규 1761호 -> 등기예규 1774호

[p.30] 2. 열람방법 / (2) 종이 폐쇄등기부의 열람 / 제목 및 1번째 단락 / <예규번호 수정>

등기예규 1763호 -> 등기예규 1776호

[p.30] II.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 1. 열람신청 /

<전부 교체>

->

#### 1. 열람신청

누구든지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상등 15조 1항).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등기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등과 그 첨부서면이다.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관할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상등규 26조 1항),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은 관할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상등규 26조 3항).

다만, 2025. 1. 31.부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열람 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데(‘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이라 함; 상등규 28조의2 1항; 2025. 1. 31.부터 시행), 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①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회사의 대표자(합자조합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을,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말한다), ②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일시 대표이사, 법원에서 선임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 청산인, 관리인 등, ③ 위 ①,②의 사람으로부터 열람권한을 위임받고 등기전자신청의 사용자등록을 한 ‘자격자대리인’에 한한다(상등규 28조의2 3항; 2025. 1. 31.부터 시행).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등기부와는 달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으므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이해관계를 명백히 하는 사유를 적거나 이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상등규 28조 2항).

[p.30~p.31] II.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 2. 열람방법 /

<전부 교체>

->

#### 2. 열람방법

등기소 방문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은 그 내용이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종이 형태로 작성된 경우에는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열람하여야 한다(상등규 29조 1항). 등기관은 그 등·초본이나 인증된 사본을 교부할 수는 없고 다만, 사진촬영을 허용하거나 열람의 연장으로써 등기관의 인증이 없는 단순한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등기예규 680호).

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은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한다(상등규 29조 2항; 2025. 1. 31.부터 시행).

[p.31] 예규 / 박스안 /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2.12.14 등기예규 제1761호]

->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3.10.13 등기예규 제1774호]

[p.37] 예규 / 박스안 /

제15조(수수료액 등) ①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금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이 정하는 수수료에 따른다.

②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의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수수료액 등) ①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금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이 정하는 수수료에 따른다.

②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의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2(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수수료 면제)

①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인터넷에 의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부동산 등기기록에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부동산 등기기록상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발급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발급 신청인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정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한다.

[p.39] 1. 원칙 / 1번째 단락 /

I. 공시제한의 원칙과 예외(등기예규 1763호 8.)

1. 원 칙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경우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또는 지배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전부 또는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상등규 34조), 현행 실무상 전산등기부에 기록된 임원, 지배인, 상호사용자, 제한능력자, 법정대리인 등(이하 '임원 등'이라 함)의 주민등록번호 중 뒷부분 7자리 숫자를 가리고(예: 000000-\*\*\*\*\*)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고 열람의 경우에도 동일한 부분을 가리고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등기예규 1763호 8. 가.).

->

I. 공시제한의 원칙과 예외(등기예규 1776호 8.)

1. 원 칙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경우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또는 지배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전부 또는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상등규 34조 1항), 현행 실무상 전산등기부에 기록된 임원, 지배인, 상호사용자, 제한능력자, 법정대리인 등(이하 '임원 등'이라 함)의 주민등록번호 중 뒷부분 7자리 숫자를 가리고(예: 000000-\*\*\*\*\*)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고 열람의 경우에도 동일한 부분을 가리고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등기예규 1776호 8. 가.).

[p.39] 2. 예외 / 1번째 단락 / <예규번호 수정>

등기예규 1763호 -> 등기예규 1776호

[p.40] 4. 아래에 5. 신설 /

<신설>

->

5.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의 경우 공시제한 조치

이해관계인에게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상등규 34조 2항; 2025. 1. 31.부터 시행).

[p.40] II. 완전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열람절차 / 제목 / <예규번호 수정>

등기예규 1763호 -> 등기예규 1776호

[p.42] 제5절 인감증명서 / I. 서 설 /

<전부 교체>

->

#### 제5절 인감증명서 및 전자인감증명서

##### I. 서 설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회사의 대표자(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 대리권을 가지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배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파산관재대리인·관리인·보전관리인·관리인대리·국제도산관리인 및 국제도산관리인대리 등은 수수료 납부하고 그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상등 16조).

상업등기법 16조에 따른 인감에 관한 증명서는 ‘인감증명서’와 ‘전자인감증명서’로 구분된다(2025. 1. 31.부터 시행).

‘인감증명서’란 상업등기법 16조에 따른 인감에 관한 증명서로서 종이문서로 발급되는 것을 말한다(상등규 1조의2 4호).

‘전자인감증명서’란 상업등기법 16조에 따른 인감에 관한 증명서로서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발급절차를 거쳐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인감제출자 및 인감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상등규 1조의2 5호; 2025. 1. 31.부터 시행).

[p.43] III.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 1.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에 의한 발급신청 / 1,2번째 단락 /

##### 1.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에 의한 발급신청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등기예규 1768호 별지 5-가호 및 5-나호 양식의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 또는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제시하여야 한다.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 또는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임을 확인함이 없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상등규 40조; 등기예규 1768호 10조 2항).

->

##### 1. 인감카드에 의한 발급신청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등기예규 1768호 별지 5-가호 및 5-나호 양식의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제시하여야 한다(전자증명서에 의한 인감증명서 발급 제도는 폐지됨; 2025. 1. 31.부터 시행).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임을 확인함이 없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상등규 40조; 등기예규 1768호 10조 2항).

[p.43] III.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 2. 인터넷을 이용한 인감증명서의 발급예약 / 제목 / <예규번호 수정> /

등기예규 1761호 -> 등기예규 1774호

[p.43] III.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 2. 인터넷을 이용한 인감증명서의 발급예약 / 2번째 단락 /

인감증명서의 발급예약을 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 46조 4항의 이용등록 절차를 거친 전자증명서 정보와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하고, 발급받고자 하는 인감증명서의 통수, 교부받을 등기소, 수령예정일시, 예약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

인감증명서의 발급예약을 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 46조 5항의 이용등록 절차를 거친 전자증명서 정보와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하고, 발급받고자 하는 인감증명서의 통수, 교부받을 등기소, 수령예정일시, 예약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p.47.~p.55] VII. 전자증명서를 이용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 등기예규 1768호 /

<전부삭제 후 아래 사항으로 대체>

->

#### VII. 전자인감증명서의 발급 및 활용(2025. 1. 31.부터 시행)

##### 1. 전자인감증명서

‘전자인감증명서’란 상법등기법 16조에 따른 인감에 관한 증명서로서 상법등기규칙에 따른 발급절차를 거쳐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인감제출자 및 인감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상등규 1조의2 5호).

##### 2. 전자인감증명서의 발급시스템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을 구축·운영·관리할 수 있다(상등규 42조의2 1항).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상등규 42조의2 2항). 대리인이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상등규 42조의2 3항).

##### 3. 전자인감증명서의 발급 신청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용도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후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상등규 42조의2 4항; 단, 보안매체에 관한 규정은 2025. 8. 1.부터 시행).

##### 4. 전자인감증명서의 활용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발급확인번호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발급시스템에서 발급받아 법원행정처장이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공고로써 지정한 행정기관 등(이하 ‘지정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자인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다(상등규 42조의3 1항, 3항).

발급증을 제출받은 지정 행정기관등은 해당 발급증에 기재된 발급확인번호를 발급시스템에 입력하여 그 전자인감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물은 전자인감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없다(상등규 42조의3 2항).

전자인감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그 형식 등은 인감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형식을 준용한다.

[p.58] 2,3번째 단락 /

다만,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법(상등 24조 1항 2호)에 의하고, ②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또는 ③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우편(상등 24조 2항)으로 하는 예외가 인정된다.

그러나,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 소멸에 관하여는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되므로(상 13조), 지점에 둔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주의를 요한다(즉,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이 아님).

->

다만,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2025. 1. 31.부터 시행)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법(상등 24조 1항 2호)에 의하고, ②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상등 24조 2항)으로 하는 예외가 인정된다.

[p.59] II. 회사(합자조합 포함)등기의 신청인 / 1. 회사의 대표자와 합자조합의 대리인 / 2번째 단락 /

다만, 합병,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합병, 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설립되는 회사를 대표할 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상등 63조 1항, 71조 1항).

->

다만,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설립되는 회사를 대표할 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하고(상등 63조 1항),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상등 71조 1항; 2025. 1. 31.부터 시행).

[p.60] 6. 회생법인의 등기신청인 / <예규번호 변경> /

등기예규 1518호 -> 등기예규 1777호

[p.62] 4.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2번째 단락

->

<삭제>

[p.66] 첫번째 단락 /

⑦ 회사의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그 지점의 표시(상등규 51조 1항 7호)

⑧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과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경우(설립, 자본증가 등 등록면허세가 일정한 금액에 비례해서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액(상등규 51조 1항 8호)

⑨ 등기신청수수료액(상등규 51조 1항 9호)

⑩ 신청연월일(상등규 51조 1항 10호)

⑪ 등기소의 표시(상등규 51조 1항 11호)

⑫ 첨부서면 원용의 뜻(상등규 53조 2항, 동시신청의 경우)

⑬ 첨부서면의 표시(등기예규 1659호 신청서 양식)

->

⑦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과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경우(설립, 자본증가 등 등록면허세가 일정한 금액에 비례해서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액(상등규 51조 1항 8호)

⑧ 등기신청수수료액(상등규 51조 1항 9호)

⑨ 신청연월일(상등규 51조 1항 10호)

⑩ 등기소의 표시(상등규 51조 1항 11호)

⑪ 첨부서면 원용의 뜻(상등규 53조 2항, 동시신청의 경우)

⑫ 첨부서면의 표시(등기예규 1659호 신청서 양식)

[p.68] 4번째 단락 /

당사자가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날인할 때에는 상업등기법 25조 1항에 의하여 미리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① 촉탁에 따른 등기와 ②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대해 회사가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① 회사의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관하여 회사가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② 주소(대표자 개인주소를 말함. 이하 같다)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기명날인을 갈음하여 서명할 수 있다(상등규 61조 1항). 이 경우 신청서가 2장 이상일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상업등기법 60조 2항의 간인을 대신한다.

->

당사자가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날인할 때에는 상업등기법 25조 1항에 의하여 미리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주소(대표자 개인주소를 말함. 이하 같다)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기명날인을 갈음하여 서명할 수 있다(상등규 61조 1항). 이 경우 신청서가 2장 이상일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상업등기법 60조 2항의 간인을 대신한다.

[p.77~p.80] III. 일괄신청 ~ IV. 동시신청 /

<전부 교체>

->

### III. 일괄신청과 동시신청

2개 이상의 등기를 한 개의 신청서로 일괄하여 신청하는 것을 일괄신청이라 한다. 동시신청은 2개 이상의 등기를 일괄신청하거나 2개 이상의 등기신청서로 연속하여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괄신청은 동시신청이지만, 동시신청은 별개의 신청서로 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양자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 1. 일괄신청

##### (1) 일괄신청의 의의와 요건

일괄신청은 수개의 등기를 하나의 신청서로 등기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일괄신청은 그 실질이 수 개의 등기신청이므로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은 각 등기기록별 또는 등기사항별로 별도로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일괄하여 1건의 신청서로 할 수 있다(상등규 53조 1항 본문). 다만,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이하 '관할외 본점이전등기'라 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신청할 수 있는 다른 등기의 허용범위가 달라 주의를 요한다(상등규 53조 1항 단서).

##### (2) 관할외 본점이전등기와 다른 등기의 일괄신청

###### (가) 신청 등기소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상등 55조; 2025. 1. 31.부터 시행).

###### (나) 신청사항(신청정보 제공) 및 일괄신청의 허용범위

###### (a) 기본신청 사항

관할외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종전의 본점 소재지와 새 본점의 소재지 및 이전연월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상등규 99조 2항; 2025. 1. 31.부터 시행).

###### (b) 본점에 둔 지배인이 있는 경우

본점에 지배인을 두고 있는 때에는 그 지배인을 둔 장소의 변경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상등 51조 3항; 관할외 본점이전등기와 일괄신청 허용).

###### (c) 상호변경등기와의 일괄신청

관할외 본점이전등기 신청을 한 회사의 상호가 새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이미 등기한 타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동일상호'라 함. 이하 같다)에 해당하여 본점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상등 26조 13호의 각하사유), 종전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변경하려는 상호가 동일상호에 해당하여 상호변경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상호변경등기신청은 관할외 본점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관할등기소 중 한 곳에 할 수 있다(상등규 100조 1항; 2025. 1. 31.부터 시행). 이 상호변경등기는 관할외 본점이전등기신청과 함께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

###### (d) 그 밖의 다른 변경등기와의 일괄신청 금지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 할 수 있지만(상등규 53조 1항 본문),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위의 (a)~(c)을 제외하고는 다른 변경등기신청과의 일괄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상등규 53조 1항 단서).

## 2. 동시신청

동시신청은 2개 이상의 등기를 한 개의 신청서로 일괄하여 신청하거나(일괄신청), 2개 이상의 등기신청서로 연속하여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신청이 문제가 되는 것은 법령에 의하여 동시신청이 강제되는 다음의 경우이다.

①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의 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의 신청(상등 51조 3항)

②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변경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상등 63조 3항)

③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설립등기 및 해산등기의 신청(상등 71조 3항)

④ 합병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등 조직변경으로 인한 변경 전 회사의 해산등기와 변경 후 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상등 66조)

⑤ 상호등기·미성년자등기·법정대리인등기·지배인등기를 한 개인상인이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 영업소 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 이전의 등기와 새 영업소 소재지에서 하는 상호등기·미성년자등기·법정대리인등기·지배인등기의 신청(상등 31조 2항, 46조 2항, 48조 2항, 50조 2항; 2025. 1. 31.부터 시행).

위 동시신청이 강제되는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업등기법 26조 12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 3. 동시신청(일괄신청 포함)과 일부취하 또는 일부각하의 허용 여부

예를 들어 상호변경등기와 임원변경등기 등을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신청하거나 2개의 신청서로 연속하여 동시신청한 경우 그 신청의 적법여부는 각 신청사건별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등기관은 일괄신청 또는 동시신청된 사건 중 각하사유가 있는 일부신청에 대하여만 각하할 수 있다. 또한 등기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신청인은 그 신청 중 일부를 취하할 수도 있다.

그러나, 회사가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이 이전하여 그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등기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변경등기신청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등과 같이 등기신청을 동시에 할 것이 강제되는 경우, 등기관은 일부신청을 각하하거나 일부신청이 취하될 경우 나머지 신청도 상업등기법 26조 12호('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의 각하사유)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p.81] II. 대리권(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2,3번째 단락 /

다만,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대해 회사의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인의 인감의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위임장에 인감이 날인될 필요도 없다(상등 25조 3항 2호; 서명도 가능).

또한, 주소(대표자 개인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기명날인을 갈음하여 서명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도 위임장에 인감날인이 필요없다(상등규 61조 1항).

->

다만, 주소(대표자 개인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기명날인을 갈음하여 서명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날인이 필요없다(상등규 61조 1항).

[p.84] IV. 주소·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등을 증명하는 서면 / 1. 증명서면 일반 /

IV. 주소·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등을 증명하는 서면

1. 증명서면 일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을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상등규 52조 1항 3호), 성명,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상등규 52조 1항 4호).

->

IV. 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 등을 증명하는 서면

1. 증명서면 일반

주소,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상등규 52조 1항 3호), 성명,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상등규 52조 1항 4호; 2025. 1. 31.부터 시행).

[p.85~p.86] V. 인감 날인에 갈음하는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부교체>

->

V. 인감 날인에 갈음하는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1. 인감 날인에 갈음하는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및 등기예규 1609호)

첨부서면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에 갈음하여 첨부서면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함)을 첨부할 수 있다.

위의 경우,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청서등(첨부서면 포함)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등기관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등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이 아닌 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신청서의 성명은 반드시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상에 기재된 서명자의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현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이동 내역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주소가 종전 주소로서 표시되어 있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같은 사람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등기신청 외의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에 해당 용도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예: ○○ 주식회사 이사 취임등기용).

신청서등에 첨부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2.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인감증명법 시행령 13조 2항 5호)

인감증명법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자(본인으로 한정하며, 피성년후견인, 미성년자 및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한다)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인감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것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라고 한다.

전자문서로 인감증명서를 발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①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② 송무(訟務), 등기(「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탁 또는 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 ③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또는 그 밖의 금융상품 거래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p.90] VII. 첨부서면 등의 제출 면제 /

<전부 교체>

->

VII. 첨부정보(첨부서면) 등의 제출 면제

첨부정보(첨부서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것은 ‘전자정부법’ 36조 1항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신청인에게는 그 제출을 면제함). 다만, 그 첨부정보(첨부서면)이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상등규 52조 3항).

[p.91] I. 서설 /

<전부 교체>

->

I. 서 설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을 변경(개인(改印))할 때에도 같다(상등 25조 1항). 다만, ① 관공서의 축탁에 따른 등기, ② 상호가등기, ③ 영업허락취소, 미성년자 사망에 따른 미성년자 등기의 소멸등기, ④ 제한능력이 능력자로 됨으로 인한 법정대리인의 퇴임,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법정대리인 등기의 소멸등기, ⑤ 합병,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 등 상업등기법 25조 3항 각 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p.92] 3번째 단락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을 위한 상호의 가등기(상등 38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인 발기인 또는 사원이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신청서 또는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상등규 80조 2항).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상등규 80조 4항).

->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을 위한 상호의 가등기(상등 38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인 발기인 또는 사원이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신청서 또는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상등규 80조 2항).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상등규 80조 4항).

[p.95] 등기예규에서 / 마지막 단락 /

<제1장 총칙 / 제3장 인감증명 / 제4장 인감카드 / 제5장 전자증명서의 인감증명서 발급기능 / 제6장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는 전술하였으므로 생략.

->

<삭제>

[p.97~p.108] 제7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전자신청) /

<전면 교체>

->

제7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전자신청)

#### I. 전자신청의 개요

등기의 전자신청이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을 말한다(상등 24조 1항 2호 ↔ 방문신청).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은 ① 회사의 등기(단, 조직변경의 등기는 제외), ② 외국회사의 영업소 등기(단,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는 제외), ③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유형으로 제한적으로 적용된다(상등규 66조의2; 2025. 1. 31.부터 시행; 합자조합과 개인상인에 관한 등기는 지정되어 있지 않음에 주의).

전자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함)이 그 신청인을 대리하여 할 수 있다(상등규 67조 1항; 방문등기신청과 달리 대리인의 자격에 제한이 있음에 주의).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 51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신청정보 내지 등기신청서라고 이해하면 됨)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기록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등기신청권자(회사의 설립등기, 회사 대표자의 변경등기의 경우 취임하는 회사대표자)와 법인이 아닌 자격자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등록번호(ID라고 이해하면 됨)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상등규 67조 2항).

등기신청정보와 함께 상업등기규칙 52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첨부서면이라 이해하면 됨)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상등규 67조 3항).

등기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신청인 또는 작성명의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이때 함께 송신하여야 하는 전자서명정보는 ① 법인인 경우에는 상업등기법 17조의 전자증명서(등기신청서 또는 등기신청위임장에 대하여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보안매체[일회용비밀번호(OTP)] 등의 추가인증수단에 의한 추가인증을 하여야 함; 추가인증수단에 관한 규정은 2025. 8. 1.부터 시행)를 송신하고, ② 개인인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2조 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공고하는 인증서[공동인증서 등]를 송신하고, ③ 관공서인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인증서를 송신하여야 한다(상등규 67조 4

항).

전자신청은 사용자등록, 전자증명서, 전자문서, 전자서명 등 방문신청에 없던 절차를 요구한다. 이는 방문신청시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위임장에 신청인이 관할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제도, 등기첨부서면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거나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제도, 주민등록표등(초)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 제도 등 등기관이 등기신청이나 첨부서면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전자신청에서도 동일하게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자신청에서 등기신청등의 진정서 확보를 위한 추가적 제도의 특징에 대하여 이하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II. 사용자등록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은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상등규 68조 1항).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사용자등록(예. 회사설립등기를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재택창업시스템]을 통해 전자신청하는 경우 온라인사용자등록이 허용됨)을 신청할 수 있고(상등규 68조 2항), 상업등기법 17조의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송신하거나 관공서가 전자인증서를 송신한 경우 또는 부동산등기규칙에 의하여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상등규 68조 5항).

사용자등록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상등규 68조 3항), 사용자등록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예. 법무사등록증 사본)도 첨부하여야 한다(상등규 68조 4항).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등기소로부터 사용자등록접수증을 교부받는데 사용자등록은 등기소로부터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사용자등록 후 사용자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하는데(상등규 71조 1항), 사용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때에는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변경하고, 인증서에 대한 정보의 변경은 사용자등록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상등규 71조 2항; 기존 사용자등록에 관한 해지신청을 하고 새로이 사용자등록신청 필요).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자격자대리인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상등규 69조 1항; 2025. 1. 31.부터 시행).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최초 등록한 당시의 기간으로 한다(상등규 69조 3항; 2025. 1. 31.부터 시행).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은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상등규 69조 4항).

사용자등록을 한 자는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및 해지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상등규 70조 1항, 2항).

## III. 전자증명서

정당한 신청권자에 의한 전자신청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자등록번호와 인증서의 입력을 통한 사용자인증 외에, 인증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증명서 제도가 도

입되었다. 전자증명서는 법인등기정보를 기초로 법인의 존재,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사무소, 대표권 등을 함께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전자서명 당시의 대표권의 존부에 관한 증명기능까지 수행한다.

전자증명서란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으로서, 상업등기법에 따라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예. 법인등기록에 등기되어 있는 현재 유효한 대표자, 지배인 등)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상등 17조 1항). 다만, ① 직무집행 정지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및 지배인(기존에 등기된 대표자, 지배인을 말함), ③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청산인은 제외한다) 및 지배인, ④ 같은 자격으로 이미 유효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중복 발급 불가), ⑤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이나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에 변경을 가져오는 등기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해당 법인의 인감제출자에 대해서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상등규 43조; 등기예규 1753호). 한편 대표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법인은 모든 대표자가 언제나 공동하여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등기예규 1753호).

전자증명서는 등기신청(법인등기, 부동산등기 모두 포함)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용도(예. 전자공탁,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등)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상등규 46조 5항).

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거나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함)이 신청인을 대리하여 할 수 있다(상등규 44조 1항). 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관할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상등규 44조 4항, 26조 3항).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상등규 44조 2항). 대리인이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상등규 44조 4항, 26조 2항).

지배인이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영업주가 그 발급신청을 확인하는 뜻을 적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상등규 44조 3항).

등기관이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을 수리하고 나면, 신청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받는다(상등규 46조 1항; 2025. 1. 31.부터 시행). 신청인은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전송하여 저장할 수 있다(상등규 46조 2항; 2025. 1. 31.부터 시행).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전자신청, 인터넷을 이용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및 전자인감증명서(2025. 1. 31.부터 시행) 발급신청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상등규 46조 5항).

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은 3년으로 하는데(상등규 46조 4항), 증명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갱신 발급받을 수 있다(상등규 49조 2항).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전자증명서의 폐지, 효력정지 또는 효력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데(상등규 47조 1항 본문), 이는 관할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상등규 47조 2항, 26조 3항), 효력정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상등규 47조 1항 단서).

변경등기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내용과 전자증명서에 기록되는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는 전자

증명서를 변경 발급받아야 하고(상등규 49조 1항), 전자증명서를 분실하거나 전자증명서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기존의 전자증명서를 폐지하고 최초의 발급절차에 의하여 전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상등규 49조 3항).

전자증명서 발급제한사유(상등규 43조)에 해당하는 등기가 된 경우, 증명기간이 지난 경우, 전자증명서가 폐지된 경우, 변경등기에 의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신청권자가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전자증명서의 효력이 소멸된다(상등규 50조).

#### IV. 전자신청의 방법 : 전자문서, 전자서명정보의 송신 등

##### 1.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의 송신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하고(상등규 67조 1항), 첨부정보도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제공하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상등규 67조 3항).

신청정보의 전자문서화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송신한다.

첨부정보의 전자문서화는 다음의 방식에 따른다.

##### ①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해당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대표자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나 경정등기, ㉡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회사, 민법법인의 사원,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위원, 지배인·대리인 등을 말한다)의 변경이나 경정등기에 대한 위임장은 위임인으로부터 위임장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송신할 수 있다.

##### ② 일반적인 첨부정보

㉢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송신한다. 다만, 자격자대리인은 위임인으로부터 받은 첨부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송신할 수 있다.

㉣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와 그 인감을 날인한 서면(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그 서명을 한 서면 포함)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송신하여야 한다(자격자대리인이라도 스캐닝하여 송신할 수 없다).

㉤ 공증인법 66조의6에 따라 인증받은 전자화문서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전자화문서 자체로 송신한다.

##### ③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첨부정보

㉦ 등록면허세납부확인정보 : 전자정부법 36조 1항에 따라 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공을 면제한다.

㉧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주민등록정보 등 :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만 면제한다. 이때 정보주체 본인은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등록이 되어 있고 등기신청인으로부터 등기위임을 받은 자격자대리인은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정보제공 요구를 대리할 수 있다.

##### 2. 전자서명정보의 송신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전자화하여 전자문서로 송신할 때에는 다음의 방식에 따라 신청인 또는 작성명의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상등규 67조 4항).

##### ① 법인 : 상업등기법 17조의 전자증명서(등기신청서 또는 등기신청위임장에 대하여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보안매체[일회용비밀번호(OTP)] 등의 추가인증수단에 의한 추가인증을 하여야 함; 추가인증수단에 관한 규정은 2025. 8. 1.부

터 시행)를 송신

② 개인 : 전자서명법 2조 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공고하는 인증서[공동인증서 등]를 송신

③ 관공서 :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인증서를 송신

한편, 등기신청을 공동으로 해야 하는 공동대표이사 등의 경우 그 중 1인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입력한 후 등기신청을 공동으로 하는 다른 사람을 지정하고, 지정된 다른 사람은 전자증명서 또는 인증서(설립등기 또는 대표자변경등기의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승인하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3.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의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납부시스템에 의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관할 관청에 납부한다.

전자신청시 등기신청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또는 전자화폐의 등의 결제 방법으로 납부한 후 14일 이내에 신청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한다.

|                                                                                                                                                                                                                                                                                                                                                                                                                                     |
|-------------------------------------------------------------------------------------------------------------------------------------------------------------------------------------------------------------------------------------------------------------------------------------------------------------------------------------------------------------------------------------------------------------------------------------|
|  전자신청 관련선례                                                                                                                                                                                                                                                                                                                                         |
| <p style="text-align: center;"><b>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시 전자서명</b></p> <p style="text-align: center;">제정 2016. 11. 14. [상업등기선례 제201611-2호, 시행]</p> <p>1. 법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개인의 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인감 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의 날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2.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시 첨부정보에 해당하는 서면을 스캐닝하여 파일로 송신하면서 신청인 및 작성명의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한 경우의 첨부정보는 단순한 스캔문서(등기예규 제1612호 제6조 제3항 제1호 등에 해당하는 스캔문서)가 아닌 전자문서에 해당하므로,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당사자도 첨부정보로 송신할 수 있다.</p> |

[p.111] (2)~(5) /

(2) 지점 관할등기소에서의 등기 -> 해당 단락 전부삭제

(3) 회사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 -> (2) 회사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 << 번호만 수정 >>

(4) 유류·착오 등의 경정 등기 -> (3) 유류·착오 등의 경정 등기 << 번호만 수정 >>

(5) 기타: 등기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 등 -> (4) 기타: 등기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 등 << 번호만 수정 >>

[p.115~p.117] 2. 수개의 등기사항을 일괄신청하는 경우의 등록면허세의 산정기준 /

<전면 교체>

->

2.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예규] <박스처리>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등기예규 1790호; 2025. 1. 31.부터 시행)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인등기 시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의 산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괄신청의 산정방법) 법인이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로써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세액을 합산한 금액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설립등기) ① 법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사항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또는 나목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배인(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과 동시에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점별로 지점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납부하고, 지점에 지배인을 둔 경우에는 지배인을 둔 장소별로 지배인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납부한다. 다만, 지점이나 지배인을 둔 장소가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인 경우에는 각각 1건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되, 지점의 경우 수 개의 지점 중에 중과세 대상 지점이 있는 경우 그 지점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제4조(본점의 이전등기) 법인이 본점을 이전한 경우 새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제5조(지점의 설치등기) ① 법인이 지점을 설치한 경우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마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② 법인이 수 개의 지점의 설치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점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수 개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되, 수 개의 지점 중에 중과세 대상 지점이 있는 경우 그 지점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예시】 1. 주식회사가 지점을 서울에 2개, 대구에 2개, 부산에 1개 설치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3건(서울 1건, 대구 1건, 부산 1건)을 납부한다.

2. 주식회사가 수원(중과세 지역임)과 화성(중과세 지역 아님)에 지점을 설치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수원의 등록면허세 1건을 납부한다(수원시와 화성시는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의 관할임).

제6조(지점의 이전등기) ① 법인이 지점을 이전한 경우 새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② 법인이 수 개의 지점의 이전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점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수 개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예시】 주식회사가 서초지점을 마포지점으로, 고양시 고양지점을 성동지점으로 이전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1건을 납부한다.

제7조(지점의 폐지등기) ① 법인이 지점을 폐지한 경우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  
체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② 법인이 수 개의 지점의 폐지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점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수 개의 지점을 폐지한 경우에는 1건의 등  
록면허세만 납부한다.

제8조(지배인에 관한 등기) ① 법인이 지배인을 선임한 경우 지배인을 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② 법인이 수인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배인을 둔 장소별로 등  
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수인의 지배인에 관한 등  
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예시】 주식회사가 서초지점에 지배인 1인, 마포지점에 지배인 2인, 대구지점에 지배인 2  
인을 선임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2건(서울 1건, 대구 1건)을 납부한다.

제9조(변경등기) 상호·목적·임원 등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등록면허  
세(「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를 합산하여 납부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사항에 수  
개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예: 2인 이상의 임원의 취임 등)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  
한다.

제10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의 변경등기 신청 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더라도 신주발  
행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의 변경등기에 필요한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만 납부한다.

[p.118~p.122] III. 등기신청수수료 /

<전면 교체>

->

### III. 등기신청수수료

상업등기의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수수료규칙 5조의3 에 따른다.

#### §§ 법 규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25.1.31.부터 시행]

제5조의3(상업등기 신청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30,000원으로 한다.

1.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합병·분할·분할합병 및 조직변경  
으로 인한 설립등기와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등기를 포함한다)
2. 본점(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를 포함한다)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본점이전등기
3.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새 소  
재지에서 하는 영업소이전등기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  
다 6,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
2. 멸실회복등기
3. 행정구역·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 등기관에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무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 및 변경등기

이를 등기사항별로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① 법인이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이하 ‘수수료규칙’이라 함) 5조의3 1항 2호에 따른 신청수수료(30,000원)만 납부한다.

② 법인이 지점을 설치 또는 이전한 경우에는 ‘지점별’로 수수료규칙 5조의3 2항에 따른 신청수수료(6,000원)를 납부하고, 수 개의 지점의 설치 또는 이전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1건만 납부한다.

③ 법인이 본점 또는 지점에 지배인을 둔 경우에는 ‘지배인을 둔 장소별’로 수수료규칙 5조의3 2항에 따른 신청수수료(6,000원)를 납부하고, 수인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1건(6,000원)만 납부한다.

④ 위 ②,③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본점 또는 지점에 지배인을 둔 경우에는 설립에 따른 신청수수료(30,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⑤ 한편, 신주발행에 의한 변경등기의 신청시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총액의 변경등기, 종류주식의 내용의 등기’ 전부에 대해 1건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내용’에 관한 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하나(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3조 제1항), ‘종류주식의 내용’란은 발행신주의 내용을 명확하게 공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상업선례 201911-1).

[p.123] 참고-촉탁에 의한 등기의 예 / 박스 내 /

[시행 2014.11.21.] [법률 제12592호, 2014.5.20., 타법개정]

->

[시행 2025. 1. 31.부터 시행]

제93조(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의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되면 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제93조(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의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되면 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98조(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 설립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제98조(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 설립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 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07조(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제107조(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p.125] 참고-촉탁에 의한 등기의 예 / 박스 내 /

민사집행법

[시행 2014.5.20.] [법률 제12588호, 2014.5.20., 일부개정]

제306조(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법원사무관 등은 법원이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한 때에는, 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항이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점이전금지 가처분은 아님에 주의)

->

민사집행법

[시행 2025. 1. 31.부터 시행]

제306조(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법원사무관 등은 법원이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한 때에는,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항이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점이전금지 가처분은 아님에 주의)

[p.127] 제1절 등기실행절차의 의의 / 3번째 단락 /

그러나, 전산화 이후에는 미리 신청내용을 등기시스템에 기입하였더라도 등기관이 식별부호에 의하여 전자서명하기 전에는 기록된 내용을 쉽게 수정할 수 있고 그 흔적이 등기부에는 남지 않으며, 신청서 내용대로 미리 등기부에 기록을 하고 그 기록된 내용을 기초로 신청서, 첨부서면 등과 비교하여 신청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편리하므로 자연히 등기실행절차도 ‘접수 → 기입 → 조사 → 교합’의 순서로 변경되었다.

->

그러나, 전산화 이후에는 미리 신청내용을 등기시스템에 기입하였더라도 등기관이 등기전자서명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기 전에는 기록된 내용을 쉽게 수정할 수 있고 그 흔적이 등기부에는 남지 않으며, 신청서 내용대로 미리 등기부에 기록을 하고 그 기

록된 내용을 기초로 신청서, 첨부서면 등과 비교하여 신청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편리하므로  
자연히 등기실행절차도 '접수 → 기입 → 조사 → 교합'의 순서로 변경되었다.

[p.128] I. 접수의 의의와 접수시기 / 1번째 단락에 추가

신청서의 접수란 당사자 등이 제출한 신청서를 등기간이 받아서 상업등기규칙 23조 1항 각  
호의 사항을 법인등기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상등규 65조 1항).

->

신청서의 접수란 당사자 등이 제출한 신청서를 등기간이 받아서 상업등기규칙 23조 1항 각  
호의 사항을 법인등기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상등규 65조 1항). 접수번호는 전국  
등기소를 기준으로 부여(이하 '전국통합접수번호'라 함)하고 1년마다 새로 부여한다(등기에  
규 1797호 5. 가. (1); 2025. 1. 31.부터 시행).

[p.131] I. 등기신청의 취하 / 1 의의 / 1번째 줄 아래 추가

법인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이면서 각자 대표인 경우에 정관 등에서 대표권을 제한하지 않는  
이상 각 대표자는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p.131~132] 2. 등기신청 취하의 방식 /

<전부교체>

->

2. 등기신청 취하의 방식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는데(상등규 56조 1항),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① 방문신청한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한 등기  
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상등규 56조 2항 1호; 2025. 1.  
31.부터 시행).

② 전자신청한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  
자문서로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상등규 56조 2항 2호;  
2025. 1. 31.부터 시행). 취하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에는 등기신청 시 송신한 전자증명서  
(및 OTP 추가인증; 2025. 8. 1.부터 시행) 또는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여 등기소에 송신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의 사유로 취하정보를 송신할 수 없거나, 대  
표자가 2인 이상이고 각자 대표이면서 전자신청을 한 대표자가 아닌 다른 대표자가 취하하  
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p.133] 2. 각하사유 /

2. 각하사유 (상등 26조 1호 내지 17호)

->

2. 각하사유 (상등 26조 1호 내지 17호. 단, 11호는 삭제됨; 2025. 1. 31.부터 시행)

[p.135] (11) 거쳐야 할 등기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한 때 (11호) /

<전부 교체>

->

(11) 거쳐야 할 등기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한 때(11호, 삭제; 2025. 1. 31.부터 시행)  
2025. 1. 31.부터 ①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② 회사가 합병  
한 경우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③ 주식회사의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분할소멸회  
사의 해산등기의 신청 등은 이를 접수한 등기소에서 관할등기소에 속하지 아니한 등기도 함  
께 처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쳐야 할 등기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한 때’라는 개념이  
사라져서 해당 각하사유가 삭제되었다.

[p.135] (12)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12호) /

<전부 교체>

->

①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의 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의 신청(상등 51조 3항), ②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변경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상등 63조 3항), ③ 분  
할·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설립등기 및 해산등기의 신청(상등 71조 3항), ④ 합병회사  
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등 조직변경으로 인한 변경 전 회사의 해산등기와 변경 후  
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상등 66조), ⑤ 상호등기·미성년자등기·법정대리인등기·지배인등기  
를 한 개인상인이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 영업소 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 이전의 등기와 새 영업소 소재지에서하는 상호등기·미성년자등기·법정대리인등  
기·지배인등기의 신청(상등 31조 2항, 46조 2항, 48조 2항, 50조 2항; 2025. 1. 31.부터  
시행) 등은 동시신청이 강제되므로 위 각각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호  
에 의하여 각하한다.

[p.136] 각주/

2)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설립을 위한 상호가등기 및 관할외 본점이전을 위한 상호가등기  
의 경우에는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예정기간이 2년, 상호나 목적, 상호와 목적변경을 위한  
상호가등기의 경우에는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예정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2)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설립을 위한 상호가등기 및 관할외 본점이전을 위  
한 상호가등기의 경우에는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예정기간이 2년, 상호나 목적, 상호와 목  
적변경을 위한 상호가등기의 경우에는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예정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p.139~p140] 제7절 /

제7절 전자신청사건의 조사·교합 등

->

<해당 절 전부 삭제>

[p.141] 제1절 / 3번째 단락 /

등기의 경정·말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상등 75조 내지 81조).

->

등기의 경정·말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상등 75조 내지 80조).

[p.144] I. 말소의 사유 / 1번째 단락 /

상업등기법 26조 1호부터 3호까지의 각하사유(관할위반, 이중등기, 등기할 사항이 아닐 때)가 있거나,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기관의 직권으로 이를 말소할 수 있다(상등 77조 내지 81조).

->

상업등기법 26조 1호부터 3호까지의 각하사유(관할위반, 이중등기, 등기할 사항이 아닐 때)가 있거나,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기관의 직권으로 이를 말소할 수 있다(상등 77조 내지 80조).

[p.146] 3. 직권말소 / 1번째 단락 /

상업등기법 26조 1호부터 3호까지의 각하 사유 및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종료된 등기에 대하여 당사자가 그 등기의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지만(상등 77조), 등기관도 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상등 78조 내지 81조).

->

상업등기법 26조 1호부터 3호까지의 각하 사유 및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종료된 등기에 대하여 당사자가 그 등기의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지만(상등 77조), 등기관도 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상등 78조 내지 80조).

[p.147] (4) 지점소재지 등기의 직권말소 /

(4) 지점소재지 등기의 직권말소

->

<해당 단락들 전부 삭제>

[p.149] I. 이의신청의 대상 / 1번째 단락 /

등기관이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상등 82조).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은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 또는 처분이다.

->

등기관이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이라 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상등 82조).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은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 또는 처분이다.

[p.151] I. 이의신청의 절차 및 효력 / 1번째 단락 /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상등 82조). 이의신청서는 해당 처분을 한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며, 이의신청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상등 83조; 등기예규 1689호 1조 1항). 이의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등기예규 1689호 1조 3항). 다만, 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하지 못한다(상등 84조).

->

이의신청은 이의의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이라 함)에 하여야 한다(상등 82조).

이의신청은 ① 관할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상등 83조; 2025. 1. 31.부터 시행).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정보를 작성하고 이의 신청인의 인증서등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상등규 171조 2항; 2025. 1. 31.부터 시행).

이의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등기예규 1689호 1조 3항).

다만, 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하지 못한다(상등 84조).

[p.151] 1. 등기관의 조치 / (1) / 2번째 단락 /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상등 85조 2항). 전자신청사건이라면 등기시스템에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출력하여 인증을 한 후 보낸다(등기예규 1709호 19조).

->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상등 85조 2항; 2025. 1. 31.부터 시행).

[p.151~p.152] 1. 등기관 조치 / (2) / 1,2번째 단락 /

등기를 마친 후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를 한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상등 85조 3항 본문). 전자신청사건이라면 등기시스템에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출력하여 인증을 한 후 보낸다(등기예규 1709호 19조).

이미 마친 등기에 대하여 상업등기법 77조 각 호(관할 위반, 이중등기,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의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등기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말소절차(상등 78조부터 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상등 85조 3항 단서).

->

등기를 마친 후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를 한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상등 85조 3항 본문; 2025. 1. 31.부터 시행).

다만, 이미 마친 등기에 대하여 상업등기법 77조 각 호(관할 위반, 이중등기,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의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등기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말소절차(상등 78조부터 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상등 85조 3항 단서).

[p.153] (1) 등기절차 / 1번째 단락 / <예규번호 수정>

등기예규 1763호 -> 등기예규 1776호

[p.157] 제2편 개인상인에 관한 등기 / <간지>

제2장 미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

제2장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p.162] 등기예규 / 제4조 / ② /

②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 지점의 등기기록에서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신청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

->

②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신청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2025. 1. 31.부터 시행).

[p.165] 2. 사전등기배척권 / 2번째 단락

예외적으로, 회사의 지점에 있어서는 그 등기가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상 35조), 지점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내에 동종영업을 위하여 동일한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더라도 상호의 등기(지점설치의 등기)를 할 수 있다(상업선례 200512-2).

->

<삭제>

[p.168] 상호등기 기재례

|      |        |
|------|--------|
| 등기번호 | 123456 |
|------|--------|

 -> 

|      |         |
|------|---------|
| 등기번호 | 1234567 |
|------|---------|

[p.171] II. 등기절차 / 1.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 / (1) 등기 사항 /

상호의 등기를 한 후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때에는 구 소재지에서는 '신영업소 주소와 이전의 취지 및 그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고, 그 등기소 관할구역 내에 상호를 사용하는 그 개인상인의 다른 영업소가 없다면 당해 상호의 등기기록은 이를 폐쇄한다(상등규 89조 6호).

그리고 신 소재지에서는 새로운 상호의 등기기록을 개설한 후 '구 소재지에 등기되어 있는 사항'과 '이전일자 및 이전 전 영업소 주소'등을 등기하여야 한다(상등 31조).

신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동일 상호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업소 이전의 등기를 할 수 없다(상 22조; 상등 29조).

->

상호의 등기를 한 후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때에는 중전 소재지에 관해서는 '새 영업소의 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고, 그 등기소 관할구역 내에 상호를 사용하는 그 개인상인의 다른 영업소가 없다면 당해 상호의 등기기록은 이를 폐쇄한다(상등규 89조 6호).

그리고 새 소재지에서는 새로운 상호의 등기기록을 개설하여 '상업등기법 30조 각 호의 사항(상호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상등 31조).

새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동일 상호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업소 이전의 등기를 할 수 없다(상 22조; 상등 29조).

[p.171] II. 등기절차 / 1.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 / (2) 등기의 신청 및 첨부서면 /

<전부교체>

->

상호를 등기한 개인상인이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 중전 영업

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는 등기(새 영업소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의 등기)와 새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는 등기(상업등기법 30조 각 호 상호등기 사항의 등기)의 신청은 종전 영업소 또는 새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서 동시에 하여야 한다(상등 31조 2항; 2025. 1. 31.부터 시행). 새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인감의 제출도 필요하다. 영업소 이전의 등기신청서에는 영업소 이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p.171] I. 등기절차 / 1.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 /

<추가>

->

### (3) 등기소의 처리

동시신청된 영업소 이전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의 등기소의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상업등기법 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각하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상등 31조 3항; 2025. 1. 31.부터 시행).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기록의 기타사항란 등에 해당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상등규 55조 4항; 2025. 1. 31.부터 시행).

[p.181] 5. 첨부서면 / (1) 공탁서 사본 / 1번째 단락 /

### (1) 공탁서 사본

상호의 가등기의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 41조 및 상업등기규칙 79조에서 정하는 공탁금액을 공탁한 후 공탁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상등규 80조 1항). 공탁서 원본은 공탁금을 회수할 때 필요한 서면이므로 사본을 첨부한다.

->

### (1) 공탁서 사본 등

상호의 가등기의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 41조 및 상업등기규칙 79조에서 정하는 공탁금액을 공탁한 후, 공탁법원, 공탁번호, 공탁금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신청서 기재사항)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탁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신청정보에 의하여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해당 공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탁서 사본 제출 면제) (상등규 80조 1항; 2025. 1. 31.부터 시행).

[p.181] 5. 첨부서면 / (1) 공탁서 사본 / 3번째 단락 /

등기관은 첨부된 공탁서 사본에 관하여 그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여 첨부된 사본이 원본과 같은지, 공탁금이 지정된 공탁금 보관은행에 납입되었는지 여부를 유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상등규 81조; 등기예규 1557호 2.). 공탁서 원본은 사본과 같음을 확인한 후, 등기신청인에게 돌려준다.

->

등기관은 상호의 가등기의 신청에 대하여 상업등기규칙 80조 및 81조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공탁법원, 공탁번호, 공탁금액 등 공탁정보의 내용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되, 공탁금이 지정된 공탁금 보관은행에 납입되었는지 여부를 유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공탁정보의 내용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등기관은 신청인에게 공탁서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공탁정보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등기관은 제출된 공탁서 사본에 관하여 그 원본의 제출을 함께 요구하여 사본이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고, 사본에 원본을 확인한 뜻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원본은 등기신청인에게 돌려 줌) (등기예규 1794호 2조; 2025. 1. 31.부터 시행).

[p.182] 상호가등기 기재례(회사설립에 관한 상호가등기)

|      |        |    |      |         |
|------|--------|----|------|---------|
| 등기번호 | 123456 | -> | 등기번호 | 1234567 |
|------|--------|----|------|---------|

[p.183] 3. 첨부서면 / (1) 공탁서 사본 /

<전부 교체>

->

(1) 공탁서 사본 등

상호의 가등기의 예정기간 연장의 등기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 41조 및 상업등기규칙 79조에서 정하는 공탁금액을 공탁한 후, 공탁법원, 공탁번호, 공탁금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신청서 기재사항)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탁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신청정보에 의하여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해당 공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탁서 사본 제출 면제) (상등규 80조 1항; 2025. 1. 31.부터 시행). 등기관의 공탁정보 확인의 방법은 상호의 가등기의 최초 신청의 경우와 동일하다.

[p.185] VI. 공탁금의 회수와 국고귀속 등 / 1. 공탁금의 회수 / 2번째 단락 /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회사나 발기인 또는 사원의 청구에 따라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상등규 82조 1항).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의 교부를 청구할 때에는 소정의 사항(상호, 공탁법원, 공탁의 연월일, 공탁번호, 공탁금액,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연월일, 증명을 청구하는 취지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한 청구서 2통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상등규 82조 2항), 등기관은 청구서 1통에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라는 증명문을 부기하고, 증명의 연월일, 등기소, 등기관의 표시 및 그 성명을 적은 후 직인을 날인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상등규 82조 3항). 발기인 등은 등기관이 발행한 공탁원인 소멸증명서를 교부받아 공탁소로부터 공탁금을 회수하게 된다.

->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회사나 발기인 또는 사원의 청구에 따라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공탁원인소멸증명서’라 함)을 발급하여야 한다

(상등규 82조 1항 본문).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의 교부를 청구할 때에는 소정의 사항(상호, 공탁법원, 공탁의 연월일, 공탁번호, 공탁금액,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연월일, 증명을 청구하는 취지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한 청구서 2통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상등규 82조 2항), 등기관은 청구서 1통에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라는 증명문을 부기하고, 증명의 연월일, 등기소, 등기관의 표시 및 그 성명을 적은 후 직인을 날인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직인 날인을 갈음하여 전자이미지직인을 기록할 수 있다; 상등규 82조 3항; 2025. 1. 31.부터 시행). 발기인 등은 등기관이 발행한 공탁원인 소멸증명서를 교부받아 공탁소로부터 공탁금을 회수하게 된다.

다만,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등을 해당 공탁법원의 공탁관에게 통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로 공탁원인소멸증명서의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상등규 82조 1항 단서; 2025. 1. 31.부터 시행).

[p.185] VI. 공탁금의 회수와 국고귀속 등 / 2. 공탁금의 국고귀속 / 2번째 단락에 추가 /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때에는 등기관은 공탁연월일, 공탁번호, 공탁금액, 공탁자 및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취지와 그 연월일을 해당 공탁법원의 공탁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등규 83조).

->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때에는 등기관은 공탁연월일, 공탁번호, 공탁금액, 공탁자 및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취지와 그 연월일을 해당 공탁법원의 공탁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등규 83조). 이 통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되, 전산장애 등을 인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공탁금의 국고귀속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을 통하여 관할 공탁소에 통지한다(등기예규 1794호 5조 ; 2025. 1. 31.부터 시행).

[p.188] 13번째 줄 / ③ /

③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상등규 52조 1항 3호)

->

③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 2025. 1. 31.부터 시행)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상등규 52조 1항 3호)

[p.188] 미성년자등기 기재례

|      |        |    |      |         |
|------|--------|----|------|---------|
| 등기번호 | 123456 | -> | 등기번호 | 1234567 |
|------|--------|----|------|---------|

[p.189] III. 미성년자에 관한 변경등기 / 1. 영업소 이전의 등기 / 2,3번째 단락 /

한편, 미성년자가 그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때에는 구 소재지에서는 영업소 이전의 등기를, 신 소재지에서는 미성년자 등기사항(상등 46조 1항 각 호)의 등기를 각각 하여야 한다(상등 46조 2항, 31조). 즉, 회사의 관할외 본점이전과 달리, 영업소 이전의 등기신청서는 신·구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고, 신 소재지 관할등

기소에는 인감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외 영업소 이전의 경우, 구 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 이전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이전한 신영업소와 이전의 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다만, 종전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않는다(상등규 89조 6호).

->

한편, 미성년자가 그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때에는, 종전 영업소의 소재지에 관한 등기(새 영업소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의 등기)와 새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는 등기(상업등기법 46조 1항 각 호의 미성년자 등기사항의 등기)의 신청은 종전 영업소 또는 새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서 동시에 하여야 한다(상등 46조 2항, 31조 2항; 2025. 1. 31.부터 시행). 새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인감의 제출도 필요하다.

관할 외 영업소 이전의 경우, 종전 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 이전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이전한 신영업소와 이전의 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다만, 종전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않는다(상등규 89조 6호).

[p.191] II. 법정대리인의 등기 / 3) / ③ /

③ 법정대리인 및 제한능력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상등규 52조 1항 3호)

->

③ 법정대리인 및 제한능력자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 2025. 1. 31.부터 시행)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상등규 52조 1항 3호)

[p.192] 법정대리인등기 기재례

|      |        |
|------|--------|
| 등기번호 | 123456 |
|------|--------|

 -> 

|      |         |
|------|---------|
| 등기번호 | 1234567 |
|------|---------|

[p.192] III. 법정대리인에 관한 변경등기 / 1. 영업소 이전의 등기 / 2번째 단락 /

한편,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때에는 구 소재지에서는 영업소 이전의 등기를, 신 소재지에서는 법정대리인 등기사항(상등 48조 1항 각 호)의 등기를 각각 하여야 한다(상등 48조 2항, 31조). 즉, 회사의 관할의 본점이전과 달리, 영업소 이전의 등기신청서는 신·구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고, 신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는 인감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한편,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때에는, 종전 영업소의 소재지에 관한 등기(새 영업소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의 등기)와 새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는 등기(상업등기법 48조 1항 각 호의 법정대리인의 등기사항의 등기)의 신청은 종전 영업소 또는 새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서 동시에 하여야 한다(상등 48조 2항, 31조 2항; 2025. 1. 31.부터 시행). 새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인감의 제출도 필요하다.

[p.193] 1번째 단락 /

관할 외 영업소 이전의 경우, 구 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 이전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이전한 신영업소와 이전의 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다만, 종전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않는다(상등규 89조 6호).

->

관할 외 영업소 이전의 경우, 종전 소재지에 관한 영업소 이전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이전한 신영업소와 이전의 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다만, 종전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않는다(상등규 89조 6호).

[p.197] 3. 기타: 등기기간 등 / 2번째 단락

지배인은 본점 또는 지점에만 등기할 사항이므로 본·지점 공동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출석주의가 적용된다(상등 24조 1항, 2항. 우편 제출 불가).

->

지배인은 영업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상 13조; 2025. 1. 31.부터 시행). 개인상인의 지배인은 그 영업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지만, 회사의 지배인은 본점의 지배인이든 지점의 지배인이든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p.198] 지배인등기 기재례(개인상인의 지배인의 경우)

|      |        |    |      |         |
|------|--------|----|------|---------|
| 등기번호 | 123456 | -> | 등기번호 | 1234567 |
|------|--------|----|------|---------|

[p.199] 2. 첨부서면 / 마지막 단락 /

지배인의 주민등록번호·주소, 영업주가 개인상인인 경우 영업주의 주민등록번호·주소는 등기사항이므로 이를 증명하는 서면(예: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상등규 52조 1항 3호).

->

지배인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25. 1. 31.부터 시행)·주소, 영업주가 개인상인인 경우 영업주의 주민등록번호·주소는 등기사항이므로 이를 증명하는 서면(예: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상등규 52조 1항 3호).

[p.200] 4. 등기의 실행방법 / 2번째 단락 /

회사와 합자조합의 지배인의 등기는 지배인 등기부가 아닌, 회사와 합자조합의 등기부에 하여야 하고(상등 51조 1항), 영업주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등기하지 않는다(상등 51조 2항). 회사와 합자조합의 지배인의 등기는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의 등기부의 지배인란에 등기한다.

->

회사와 합자조합의 지배인의 등기는 지배인 등기부가 아닌, 회사와 합자조합의 등기부에 하여야 하고(상등 51조 1항), 영업주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등기하지 않는다(상등 51조 2항). 회사와 합자조합의 지배인의 등기는 본점의 등기부의 지배인란에 등기한다(2025. 1. 31.부터 시행).

[p.201~p.203] II. 지배인을 둔 장소의 관할외 이전시 변경등기 절차 /

<전부교체>

->

#### 1. 개인상인의 지배인의 경우

개인상인이 지배인을 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영업소의 소재지에서는 새 영업소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새 영업소의 소재지에서는 지배인 등기에 관한 사항(상등 50조 1항 각 호)을 등기하여야 한다(상등 50조 2항, 31조 1항; 2025. 1. 31.부터 시행).

위와 같이 종전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와 새 영업소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는 등기의 신청은 종전 영업소 또는 새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상등 50조 2항, 31조 2항; 2025. 1. 31.부터 시행).

동시신청된 위 등기신청을 접수한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상업등기법 2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각하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상등 50조 2항, 31조 3항; 2025. 1. 31.부터 시행).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기록의 기타사항란 등에 해당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상등규 55조 4항; 2025. 1. 31.부터 시행).

종전 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 이전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다만, 종전 등기소 관할구역 내에 그 지배인을 둔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기록은 폐쇄하지 않고, 등기기록의 지배인을 둔 장소란에 이전의 뜻과 이전연월일 및 등기연월일을 기록하고 이전한 당해 영업소만 말소한다.

새 소재지에서 영업소 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새 소재지에 당해 지배인에 관한 등기기록이 없는 때에는 당해 지배인에 관한 등기기록을 개설하여 지배인 등기에 관한 사항(상등 50조 1항 각 호)을 등기하고, 등기기록의 개설사유 및 연월일란에 지배인을 둔 장소를 이전한 뜻과 그 연월일 및 등기연월일을 기록한다. 새 소재지에 당해 지배인에 관한 등기기록이 이미 개설되어 있는 때에는 그 등기기록의 지배인을 둔 장소란에 신 영업소 소재지 및 지배인을 둔 장소를 이전한 뜻과 이전연월일 및 그 등기연월일을 기록한다.

#### 2.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지배인인 경우

회사 또는 합자조합(이하 ‘회사등’이라 함)의 지배인은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므로 회사등의 본점 등기기록의 지배인란의 지배인을 둔 장소에 새로운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지점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도 포함)를 기재하고 종전 소재지를 말소한다(등기기록의 폐쇄사항·개설이 발생하지 않는다; 2025. 1. 31.부터 시행).

위 지배인을 둔 장소의 변경등기는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상등 51조 3항).

[p.204] II. 등기절차 / 1. 등기신청인 등 / 2, 3번째 단락 /

회사가 지배인을 두고 있는 지점을 폐지한 때에는 그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지점 폐지의 등기와, 지점의 폐지에 의한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상등 51조 3항).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으면 법원이 당해 파산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파산선고의 등기를 촉탁하는데, 파산선고의 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이 지배인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것은 아니다(등기예규 1518호 5조 2항). 한편, 개인상인인 영업주 또는 지배인에 관해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지배인의 등기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촉탁서에 파산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해서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파산등기를 촉탁한다(채무자회생법 24조 3항).

->

회사가 지배인을 두고 있는 지점을 폐지한 때에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지점 폐지의 등기와, 지점의 폐지에 의한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상등 51조 3항; 2025. 1. 31.부터 시행).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으면 법원이 당해 파산법인의 본점소재지 등기소에 파산선고의 등기를 촉탁하는데, 파산선고의 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이 지배인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것은 아니다(등기예규 1777호 5조 2항). 한편, 개인상인인 영업주 또는 지배인에 관해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지배인의 등기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촉탁서에 파산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해서 본점소재지 등기소에 파산등기를 촉탁한다(채무자회생법 24조 3항).

[p.204] 3. 등기의 실행방법 / 1번째 단락

영업주가 회사 또는 합자조합인 경우, 대리권 소멸의 등기는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의 등기기록의 지배인란에 한다. 대리권 소멸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의 사유(지배인의 사임·해임·사망·금치산선고, 영업의 폐지 등의 뜻) 및 그 연월일과 등기연월일을 기록한다.

->

영업주가 회사 또는 합자조합인 경우, 대리권 소멸의 등기는 본점의 등기기록의 지배인란에 한다. 대리권 소멸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의 사유(지배인의 사임·해임·사망·피성년후견선고, 영업의 폐지 등의 뜻) 및 그 연월일과 등기연월일을 기록한다(2025. 1. 31.부터 시행).

[p.210] (2) 종류주식 아래 / (3) 복수의결권주식 <추가>

<추가>

### (3) 복수의결권주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육성법’이라 함)이 개정되어 동법 제16조의11 내지 제16조의16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창업주에게 주식회사 1주 1의결권의 예외로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2023. 11. 17.시행).

복수의결권주식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창업주에게 존속기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발행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법 16조의11 1항, 5항).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의 수는 1주마다 1개 초과 10개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하고(벤처기업육성법 16조의11 7항),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벤처기업육성법 16조의11 3항,4항).

복수의결권주식으로 발행되는 신주대금 납입은 금전납부, 상계납입, 현물출자 뿐만 아니라 창업자가 기 보유한 보통주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보통주식으로 납입하려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상법상 자기주식에 관한 규정(상 341조, 341조의 2) 및 현물출자에 관한 검사 규정(상 422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벤처기업육성법 16조의 11 8항).

벤처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상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등기실무는 벤처기업도 상법상 주식회사이고 주식회사는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를 등기사항으로 하고 있으므로(상 317조 2항) ‘복수의결권주식’도 등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p.217] (나) 관련 문제 /

<전부 교체>

->

(나) 관련 문제

(a) '1인 주주 주식회사 임원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의 경우(상업선례 201901-2)

1인 주주가 상법 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의 절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현실로 개최하여 임원의 해임을 결의하고 작성된 의사록에 인증을 받는다면 이를 임원 해임등기의 첨부정보로 제출할 수 있다(상등규 128조 2항, 130조; 공증인법 66조의2 1항). 그런데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로서 상법 363조 4항의 절차(서면결의 등)를 밟는다면, 상업등기규칙 128조 1항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① 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해당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서면결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② 서면동의를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상업선례 201809-3). 다만, "법원의 확정 판결 등으로 1인 주주라는 사실을 등기관이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때"에는 서면결의 등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는 첨부할 필요는 없다.

(b)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조합이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상업선례 202312-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조합은 상법상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설립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조합이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그 조합에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면(조합계약서 등)과 업무집행조합원이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개인인감을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에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다만, 수인의 업무집행조합원을 선임한 경우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총회 또는 조합원총회의사록이 요구될 수 있음).

(c) 자기주식을 소유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에 관하여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상업선례 202406-1).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자기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자기주식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도 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기주식을 소유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p.219~p.222] III.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전부 삭제>

[p.225] (g)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1번째 단락 /

(g)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상 289조 3항 본문). 따라서 시사에 관한 것이 아닌 특정 업계에 관한 신문이나, 일간이 아닌 주간·월간신문을 공고를 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없다.

->

(g)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상 289조 3항 본문). 따라서 시사에 관한 것이 아닌 특정 업계에 관한 신문이나, 일간이 아닌 주간·월간신문을 공고를 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없다. 다만, 정관이나 등기신청서에 일간신문의 명칭(예. 한국○○신문, 한○○신문, 경○신문 등) 그대로 기재하면 되고 ‘일간’ 단어를 추가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상업선례 202403-1).

[p.235] 3. 등기사항 /

⑤ 본점의 소재지

->

⑤ 본점의 소재지, 설립시부터 지점을 둔 경우에는 그 지점의 소재지와 명칭(특례법 3조; 특례규칙 3조; 2025. 1. 31.부터 시행)

[p.236] 첫번째 단락 /

㉔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본점 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지점에 지배인을 선임한 때에는 지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지배인을 둔 장소

->

㉔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본점 또는 지점에 지배인을 둔 때에는 ㉑ 지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㉒ 지배인을 둔 장소, ㉓ 2명 이상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규정(상 13조,12조; 상등 50조,51조; 본점 및 지점 지배인 모두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서 등기한다; 2025. 1. 31.부터 시행)

[p.243] 주식회사 등기 기재례

|      |        |    |      |         |
|------|--------|----|------|---------|
| 등기번호 | 123456 | -> | 등기번호 | 1234567 |
|------|--------|----|------|---------|

[p.245]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 양식에서

|           |                                  |                                  |                                       |
|-----------|----------------------------------|----------------------------------|---------------------------------------|
| 본/지점 신청구분 | 1. 본점신청 <input type="checkbox"/> | 2. 지점신청 <input type="checkbox"/> | 3. 본·지점 일괄신청 <input type="checkbox"/> |
|-----------|----------------------------------|----------------------------------|---------------------------------------|

->

<삭제>

[p.248] II. 등기절차 / 첫 번째 단락

위 사항의 변경(준립기간·해산사유는 설정·변경·폐지 포함)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때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317조 3항,4항, 183조).

->

위 사항의 변경(준립기간·해산사유는 설정·변경·폐지 포함)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때로부터 2주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317조 3항,4항, 183조; 2025. 1. 31.부터 시행).

[p.250] II. 등기절차 / 2. 등기신청인 / 2 번째 단락 / <예규번호 변경> /

등기예규 1518호 -> 등기예규 1777호

[p.250] II. 등기절차 / 3. 등기기간, 등기사항 / 첫 번째 단락

본점의 이전은 본점 및 지점에서 모두 등기할 사항이다. 본점이전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새로운 본점의 소재장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상 317조 4항, 183조).

->

본점이전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본점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상등 54조; 2025. 1. 31.부터 시행).

[p.251~p.252] 4. 등기신청의 방식 / (2) 관할외 본점이전의 경우

<전부교체>

->

(가) 신청 등기소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상등 55조; 2025. 1. 31.부터 시행).

(나) 신청사항(신청정보 제공) 및 일괄신청의 허용범위

(a) 기본신청 사항

관할외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종전의 본점 소재지와 새 본점의 소재지 및 이전연월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상등규 99조 2항; 2025. 1. 31.부터 시행).

(b) 본점에 둔 지배인이 있는 경우

본점에 지배인을 두고 있는 때에는 그 지배인을 둔 장소의 변경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상등 51조 3항).

(c) 상호변경등기와의 일괄신청

관할외 본점이전등기 신청을 한 회사의 상호가 새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이미 등기한 타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동일상호’라 함. 이하 같다)에 해당하여 본점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상등 26조 13호의 각하사유), 종전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변경하려는 상호가 동일상호에 해당하여 상호변경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상호변경등기신청은 관할외 본점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관할등기소 중 한 곳에 할 수 있다(상등규 100조 1항; 2025. 1. 31.부터 시행). 이 상호변경등기는 관할외 본점이전등기신청과 함께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

(d) 그 밖의 다른 변경등기와의 일괄신청 금지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 할 수 있지만(상등규 53조 1항 본문),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의 (a)~(c)을 제외하고는 다른 변경등기신청과의 일괄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상등규 53조 1항 단서).

[p.252] 5. 신청서의 기재 / (2) 관할외 본점이전의 경우 /

<전부 교체>

->

(2) 관할외 본점이전의 경우 (상등규 154조 1항, 99조 1항; 등기예규 별지양식 66-2호; 2025. 1. 31.부터 시행)

(가) 종전의 본점 소재지

신청서 양식 중 등기기록을 특정하는 부분의 '본점'란을 '종전 본점'란으로 하여 기재한다 ('등기할 사항'에 기재하는 것은 아님)

(나) 등기할 사항

신청서의 '등기할 사항'란에는 다음 각 사항을 기재한다.

① 새 본점 소재지 및 이전 연월일

② 본점에 지배인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지배인을 둔 장소를 이전한 뜻과 그 연월일

③ 상호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상호와 변경 연월일

[p.253] 8. 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 [p.256] 9. 관할외 본점이전등기신청의 취하 /

<전부 교체>

->

#### 8. 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 (1) 관할내 본점이전등기의 경우

일반적인 변경등기신청사건의 처리와 동일하다. 등기부상 본점란에 새로운 본점, 변경의 취지 및 그 연월일(이전연월일), 등기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한다**(상등규 55조 1항, 3조 3항). 이 경우 종전 본점의 등기를 말소한다(상등규 55조 3항).

본점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본점에 둔 지배인의 지배인을 둔 장소의 변경등기를 일괄신청한 경우에는 그 지배인을 둔 장소의 변경등기도 하여야 한다(상등 51조 3항).

##### (2) 관할외 본점이전등기의 경우

###### (가) 등기신청의 접수 및 처리등기소

종전 본점 소재지 또는 새 본점 소재지 중 어느 곳에서도 신청을 접수할 수 있고(상등 55조; 2025. 1. 31.부터 시행),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이 그 등기신청을 전부 처리하여야 한다(상등 56조; 2025. 1. 31.부터 시행).

###### (나) 등기관의 조치

관할외 본점이전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신·구소재지 관할 중 어느 곳이든 접수한 등기관)은 해당 등기기록의 '본점'란에 새 본점소재지와 이전연월일(신청인의 신청사항을 등기)을, '기타사항'란에 접수한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등기관의 직권등기)을 각각 기록한 후, 그 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새 본점의 소재지로 넘겨주는 조치를 한다(등기기록 폐쇄, 신규 개설이 없음에 주의; 상등규 99조 2항; 2025. 1. 31.부터 시행).

상업등기규칙 제100조 제1항에 따라 관할외 본점이전등기와 동시에 상호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종전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해당 상호등기신청이 관할외 본점이전이전등기와 동시에 접수되면, 종전 소재지 등기관은 본인의 관할에 속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변경등기 신청사건을 관할외 본점이전등기 신청사건과 함께 처리할 수 있다(상등규 100조 2항; 상등 4조 2항; 2025. 1. 31.부터 시행).

#### 9. 관할외 본점이전등기신청의 취하

관할외 본점이전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종전 본점소재지 또는 새 본점소재지 중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를 말함)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 취하하여야 한다(상등규 56조 2항; 2025. 1. 31.부터 시행).

[p.256~p.257] 10. 지점소재지에서의 본점이전등기 /

->

<전부 삭제>

|                                                                                                                                           |                                                                                                 |               |               |   |   |
|-------------------------------------------------------------------------------------------------------------------------------------------|-------------------------------------------------------------------------------------------------|---------------|---------------|---|---|
| [관내이전의 경우]                                                                                                                                |                                                                                                 |               |               |   |   |
| 본 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 ○호(서초동)                                                                                                             | <table border="1"> <tr> <td>.</td> <td>.</td> </tr> <tr> <td>.</td> <td>.</td> </tr> </tabl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 ○호(가산동)                                                                                                              | <table border="1"> <tr> <td>20○○. ○. ○ 변경</td> </tr> <tr> <td>20○○. ○. ○ 등기</td> </tr> </table> | 20○○. ○. ○ 변경 | 20○○. ○. ○ 등기 |   |   |
| 20○○. ○. ○ 변경                                                                                                                             |                                                                                                 |               |               |   |   |
| 20○○. ○. ○ 등기                                                                                                                             |                                                                                                 |               |               |   |   |
| [관외이전의 경우]                                                                                                                                |                                                                                                 |               |               |   |   |
| ◆구본점소재지 본점등기부 폐쇄                                                                                                                          |                                                                                                 |               |               |   |   |
| <div> <div>기타사항</div> <div> 1. 본점이전<br/> 20○○년 ○월 ○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 ○호(삼평동)으로 본점이전<br/> <div>20○○년 ○월 ○일 등기 동일폐쇄</div> </div> </div> |                                                                                                 |               |               |   |   |
| ◆신본점소재지 본점등기부 개설                                                                                                                          |                                                                                                 |               |               |   |   |
| 본 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 ○호(삼평동)                                                                                                           | <table border="1"> <tr> <td>.</td> <td>.</td> </tr> <tr> <td>.</td> <td>.</td> </tr> </tabl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iv> <div>등기용지 개설 사유 및 연월일</div> <div> 20○○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 ○호(서초동)으로부터 본점이전<br/> <div>20○○년 ○월 ○일 등기</div> </div> </div>       |                                                                                                 |               |               |   |   |
| [주] 관외이전의 경우 신본점소재지의 본점등기부 개설시 설립등기사항, 임원의 취임연월일을 기록하는 외에, 본점이전의 뜻과 그 연월일을 등기기록 개설 사유 및 연월일란에 기록한다.                                       |                                                                                                 |               |               |   |   |

->

[관내이전의 경우]

|                               |               |
|-------------------------------|---------------|
| 본 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 ○호(서초동) | . .           |
|                               | . .           |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 ○호(가산동)  | 20○○. ○. ○ 변경 |
|                               | 20○○. ○. ○ 등기 |

[관외이전의 경우]

|                                 |               |
|---------------------------------|---------------|
| 본 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 ○호(서초동)   | . .           |
|                                 | . .           |
| 본 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 ○호(삼평동) | 20○○. ○. ○ 변경 |
|                                 | 20○○. ○. ○ 등기 |

기 타 사 항

1. 본점이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본점이전등기

20○○년 ○월 ○일 등기

[주] 관외이전의 경우 '본점'란에 새 본점 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기타사항'란에 접수한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각각 기록한다.

[p.258~p.259] 주식회사 관할외본점이전등기 신청서 /

<전부 교체>

->

|                   |       |     |        |       |
|-------------------|-------|-----|--------|-------|
| 주식회사본점이전(관할외)등기신청 |       |     |        |       |
| 접 수               | 년 월 일 | 처리인 | 등기관 확인 | 각종 통지 |
|                   | 제 호   |     |        |       |

|                                            |                                                                                                  |            |             |
|--------------------------------------------|--------------------------------------------------------------------------------------------------|------------|-------------|
| 상 호                                        | ○○주식회사                                                                                           | 등 기 번<br>호 | ○○○○○<br>○○ |
| 종전 본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 ○호 (서초동)                                                                       |            |             |
| 등기의 목적                                     | 본점이전등기                                                                                           |            |             |
| 등기의 사유                                     | 20○○년 ○월 ○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상 본점소재지를 변경하고 같은 날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20○○년 ○월 ○일 본점을 관할외 이전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            |             |
| 등 기 할 사 항                                  |                                                                                                  |            |             |
| 새 본 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 ○호 (삼평동)                                                                     |            |             |
| 본점을 이전한 뜻과 그 연월일                           | 20○○년 ○월 ○일 본점이전                                                                                 |            |             |
| 지배인을 둔 장소를 이전한 뜻과 그 연월일(본점에 지배인을 두고 있는 경우) |                                                                                                  |            |             |
| 상호를 변경한 경우 변경후의 상호와 변경 연월일                 |                                                                                                  |            |             |

| 신청등기소 및 등록면허세/수수료                                                                                                                                                                                                                        |               |                       |                  |            |     |
|------------------------------------------------------------------------------------------------------------------------------------------------------------------------------------------------------------------------------------------|---------------|-----------------------|------------------|------------|-----|
| 등록면허세                                                                                                                                                                                                                                    | 금112,500<br>원 | 지방교육세                 | 금22,500원         | 농어촌특<br>별세 | 금 원 |
| 세액합계                                                                                                                                                                                                                                     | 금135,0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금30,000원   |     |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               |                       | 24-00-01234567-5 |            |     |
| 첨 부 서 면                                                                                                                                                                                                                                  |               |                       |                  |            |     |
| 1.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 1통                                                                                                                                                                                                                       |               |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1 |                  |            |     |
| 1. 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 1통                                                                                                                                                                                                                       |               | 통                     |                  |            |     |
| 1. 정관 1통                                                                                                                                                                                                                                 |               | <기 타>                 |                  |            |     |
|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               |                       |                  |            |     |
| 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1통                                                                                                                                                                                                                      |               |                       |                  |            |     |
| <p>20〇〇. 〇. 〇.</p> <p>신 청 인 상 호 : 〇〇주식회사</p> <p>본 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〇, 〇호 (삼평동)</p> <p>대표이사 성 명 : 김갑돌 ㉠ (전 화 : )</p> <p>주 소 :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 〇</p> <p>대 리 인 법무사 : 〇 〇 〇 ㉠ (전 화 : )</p> <p>주 소 :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 〇</p> <p>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귀중</p> |               |                       |                  |            |     |

- 신청서 작성요령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p.260~p.261] III. 본점이전등기의 말소 /

<전부 교체>

->

### III. 본점이전등기의 말소

#### 1. 이사회 결의에 기초한 본점이전등기의 말소

본점이전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사항인데(상 393조 1항, 예외는 있음), 본점이전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에 무효 또는 부존재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사회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판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점이전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에 무효 또는 부존재의 원인이 있음을 확인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법원의 말소촉탁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회사가 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때, 위 판결은 이행판결이 아니라 확인판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승소한 원고가 위 판결을 기초로 당사자를 대리하여 말소신청을 할 수는 없다. 본점이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본점이전의 등기를 말소한 후 본점이전의 등기에 의하여 말소된 종전 본점의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상등규 153조).

#### 2. 주주총회 결의에 기초한 본점이전등기의 말소

관할내 본점이전이라 하더라도 ① 정관의 변경을 수반하거나(독립된 최소행정 구역이 아닌 소재지번까지 정관에 기재한 경우, 2개의 독립된 최소행정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 내에서의 이전), ② 정관에 본점이전을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한 경우에는, 본점이전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관할외 본점이전의 경우에는 위 ①,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관상 본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야 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점이전 또는 정관상 본점소재지의 변경을 결의한 위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의 확인 또는 취소의 판결이 있으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본점이전등기의 말소가 행하여진다(비송 107조 6호).

[p.263] III. 등기절차 / 1. 서설 /

<전부교체>

->

#### 1. 서 설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는 본점 소재지의 관할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지점 소재지에서 별도의 등기기록을 개설하지 아니한다(2025. 1. 31.부터 시행).

한편, 지배인을 둔 지점이 이전·변경·폐지된 경우 지점의 이전·변경·폐지의 등기의 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변경·폐지의 등기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상등 51조 3항).

회사가 지점을 설치하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하는 것이 강제되므로(상 317조 3항, 4항, 181조, 182조 2항), 지점이 설치 또는 이전되는 관할 구역내에 동일상호가 등기되어 있어도 지점의 설치 또는 이전의 등기가 가능하다(등기예규 1547호 4조 2항; 상업선례 200512-2).

[p.264] 2. 등기의 신청 / (2) 등기기간 /

<전부 교체>

->

(2) 등기기간, 등기사항 등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상 317조 1항, 181조 1항; 2025. 1. 31.부터 시행).

회사가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상 317조 4항, 182조 2항; 2025. 1. 31.부터 시행).

지점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지점을 폐지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지점 폐지 또는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317조 4항, 183조; 2025. 1. 31.부터 시행).

등기기간의 기산일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의한 일자가 아니라 실제로 지점을 설치한 날이 될 것이나, 사전에 지점을 설치한 다음에 설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이 기산일이 된다(상업선례 1-133). 지점 설치에 따른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 등으로 정한 설치일 이전의 날에는 그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상업선례 200611-1). 지점의 이전·변경·폐지의 등기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지배인을 둔 지점이 이전·변경·폐지된 경우 지점의 이전·변경·폐지의 등기의 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변경·폐지의 등기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상등 51조 3항).

[p.264] (3)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특례 /

->

<전부 삭제>

[p.265] 3. 등기사항 /

->

<전부 삭제>

[p.266] 4. 첨부서면 /

<전부 교체>

->

### 3. 첨부서면

지점의 설치·이전·폐지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에 의하므로(상 393조 1항), 그 결의를 한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상등규 128조 2항).

다만, 1명 또는 2명의 이사만을 둔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가 이를 결정하므로(상 383조 1항 단서, 6항), 그 이사의 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상업선례 200707-5).

한편, 정관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위 결의를 하여야 할 때에는 주주총회 의사록 및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상등규 128조; 상업선례 1-116).

정관에 지점소재지를 특정하여 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점 등기사항 결의에 관한 위 서면 외에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p.281] III.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변경 / 첫 번째 단락

임원은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하고(상 317조 2항 8호, 12호),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는 주소도 등기하여야 한다(동조 동항 9호). 따라서, 임원의 성명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의 경우에는 3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도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317조 3항, 4항, 183조; 특례법 3조 6호).

->

임원은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하고(상 317조 2항 8호, 12호),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는 주소도 등기하여야 한다(동조 동항 9호). 따라서, 임원의 성명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317조 3항, 4항, 183조; 2025. 1. 31.부터 시행).

[p.281] I. 등기사항 / 1. 취임의 경우 / 2번째 단락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등기한다(특례규칙 2조). 외국인의 성명을 등기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등기한다(등기예규 1628호 8).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등기한다(특례규칙 2조; 2025. 1. 31.부터 시행). 외국인의 성명을 등기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등기한다(등기예규 1628호 8).

[p.284] II. 등기기간 / 첫 번째 단락

임원의 등기사항에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발생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대표권 있는 임원의 변경은 지점소재지에서도 3주간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상 317조 4항, 183조).

->

임원의 등기사항에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발생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상 317조 4항, 183조; 2025. 1. 31. 시행).

[p.291] II. 일시이사 / 4번째 단락

법원이 일시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는데 (상 386조 2항, 비송 107조 4호), 일시대표이사 등 대표권이 있는 이사의 경우에는 지점소재지에서도 등기를 하여야 한다(특례규칙 3조 1호).

->

법원이 일시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386조 2항; 비송 107조 4호),

[p.292] III. 직무대행자 / 3번째 단락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하고(민 52조의2), 이 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한다(민집 306조).

->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하고(상407조 3항; 2025. 1. 31.부터 시행), 이 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한다(민집 306조).

[p.298] 등기기재례 중 2) 이사회위 상실에 의하여 퇴임하는 경우 /

2) 이사회위 상실에 의하여 퇴임하는 경우

| 임원에 관한 사항                                        |    |    |    |       |          |
|--------------------------------------------------|----|----|----|-------|----------|
| <del>사내이사 이○○ 550820-1234567</del>               |    |    |    |       |          |
| 20○○년                                            | ○월 | ○일 | 취임 | 20○○년 | ○월 ○일 등기 |
| 20○○년                                            | ○월 | ○일 | 퇴임 | 20○○년 | ○월 ○일 등기 |
| <del>대표이사 이○○ 550820-1234567-○○-○○구-○○로-○○</del> |    |    |    |       |          |
| 20○○년                                            | ○월 | ○일 | 취임 | 20○○년 | ○월 ○일 등기 |
| 20○○년                                            | ○월 | ○일 | 퇴임 | 20○○년 | ○월 ○일 등기 |

->

2) 이사회위 상실에 의하여 퇴임하는 경우

| 임원에 관한 사항                                        |    |    |      |       |          |
|--------------------------------------------------|----|----|------|-------|----------|
| <del>사내이사 이○○ 550820-1234567</del>               |    |    |      |       |          |
| 20○○년                                            | ○월 | ○일 | 취임   | 20○○년 | ○월 ○일 등기 |
| 20○○년                                            | ○월 | ○일 | 임기만료 | 20○○년 | ○월 ○일 등기 |
| <del>대표이사 이○○ 550820-1234567-○○-○○구-○○로-○○</del> |    |    |      |       |          |
| 20○○년                                            | ○월 | ○일 | 취임   | 20○○년 | ○월 ○일 등기 |
| 20○○년                                            | ○월 | ○일 | 퇴임   | 20○○년 | ○월 ○일 등기 |

[p.300] [표14] 등기신청서 양식 중/

|          |                                                                                                        |
|----------|--------------------------------------------------------------------------------------------------------|
| 본/지점신청구분 | 1. 본점신청 <input type="checkbox"/> 2. 지점신청 <input type="checkbox"/> 3. 본·지점일괄신청 <input type="checkbox"/> |
|----------|--------------------------------------------------------------------------------------------------------|

->

<삭제>

[p.315] 박스 아래 및 (2) 미상각액 위 / <추가>

<추가>

->

한편,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2주 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등기실무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를 준용하여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는 ‘복수의결권주식 ○○○주’와 같이 등기하되, 해당 복수의결권주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종류주식의 내용’란이 아닌 ‘기타 사항’란에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

[p.328] (2)부여의 한도 / 2번째 단락 /

한편, 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고(상 542조의3 2항; 상법시행령 30조 3항), 벤처기업인 주식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조의3 8항; 동 시행령 11조의3 6항).

->

한편, 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현재 100분의 15)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고(상 542조의3 2항; 상법시행령 30조 3항), 벤처기업인 주식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조의3 8항; 동 시행령 11조의3 6항).

[p.331] III. 비교개념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 <추가>

<추가>

->

III. 비교개념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비상장 벤처기업과 그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교부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육성법’이라 함)의 개정(제16조의17 신설; 2024. 7. 10.시행)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등기절차가 마련되었다.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제도로, 근속이나 성과 등에 연동할 수 있어 우수인재 유치 및 장기 근속을 유도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하지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직접 주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특정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주식매수선택권과 차이가 있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당 벤처기업의 임직원 중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계약(이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라 함)을 체결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법 16조의17 1항).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①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뜻, ②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의하여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자격 요건, ④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제한과 조건의 내용, ⑤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야 한다(벤처기업육성법 16조의17 2항).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위 정관 규정을 두는 경우 설립시는 설립일로부터 2주 내에, 설립 후에는 정관 변경일로부터 2주 내에 해당 정관의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벤처기업육성법 16조의17 7항). 주식매수선택권 정관 규정과 달리 별도의 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타사항란’에 등기하게 된다.

[p.379] II. 등기절차 / 1. 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 첫 번째 단락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521조의2, 228조).

->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주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521조의2, 228조; 2025. 1. 31.부터 시행).

[p.379] II. 등기절차 / 1. 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 3 번째 단락 / <예규번호 변경> /

등기예규 1518호 -> 등기예규 1777호

[p.379] 2. 등기신청인 / (2) 예외 : 법원 등의 촉탁 등 / 첫 번째 단락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법원이 해산등기를 촉탁한다(비송 93조).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의 보험업의 허가 취소로 해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가(보험업법 137조 2항), 투자회사가 금융위원회의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로 해산한 때에도 금융위원회가(자본시장법 202조 9항 1호),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가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산할 것을 회생계획에 정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촉탁한다(채무자회생규칙 9조 1항). 한편, 상법 520조의2 1항 본문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휴면회사의 해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상등 73조).

->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법원이 해산등기를 촉탁한다(비송 93조).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의 보험업의 허가 취소로 해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가(보험업법 137조 2항), 투자회사가 금융위원회의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로 해산한 때에도 금융위원회가(자본시장법 202조 9항 1호),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가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산할 것을 회생계획에 정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촉탁한다(채무자회생규칙 9조 1항; 2025. 1. 31.부터 시행). 한편, 상법 520조의2 1항 본문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휴면회사의 해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상등 73조).

[p.382] 등기예규 / 제2조 /

② 제1항의 해당 등기기록의 선별은 법인을 단위로 하여야 하고, 본점(이하 ‘주된 사무소’를 포함한다) 또는 지점(이하 ‘지사사무소’를 포함한다) 등기기록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최후 등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법인의 본점과 지점의 등기기록은 선별대상인 등기기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해당 등기기록의 선별은 법인을 단위로 하여야 한다. <저자 주석 : 2025. 1. 31.부터 시행 예상; 예규 개정안 확정 전>.

[p.384] 등기예규 / 제11조 /

<제11조 전부 : 삭제하고>

->

제11조(지점등기기록의 정리 등) <삭제 예상; 2025. 1. 31.부터 시행 예상; 예규 개정안 확정 전>

[p.389] IV. 등기절차 / 1. 최초 청산인 및 최초 대표청산인의 등기 / (1) 등기기간 / 첫 번째, 2번째 단락

이사가 법정청산인이 된 때에는 회사가 해산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청산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청산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청산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이사가 법정청산인이 된 때에는 회사가 해산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2025. 1. 31.부터 시행).

그 외의 경우에는 청산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2주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2025. 1. 31.부터 시행).

[p.391] 2.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에 관한 변경등기 / (1) 등기기간 / 첫 번째 단락

등기된 청산인 또는 대표청산인에 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등기하여야 하고, 대표권을 행사하는 청산인에 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소재지에서도 3주간 내에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542조 1항, 252조 2항, 183조).

->

등기된 청산인 또는 대표청산인에 관한 변경이 있는 경우 2주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상 542조 1항, 252조 2항, 183조; 2025. 1. 31.부터 시행).

[p.394] II. 등기절차 / 1. 등기기간 / 첫 번째 단락 /

회사계속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521조의2, 229조 3항).

->

회사계속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2주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521조의2, 229조 3항; 2025. 1. 31.부터 시행).

[p.399] III. 청산종결의 등기절차 / 1. 등기기간 / 첫 번째 단락 /

청산이 완료된 때에는 청산인은 결산보고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 542조 1항, 264조).

->

청산이 완료된 때에는 청산인은 결산보고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2주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 542조 1항, 264조; 2025. 1. 31.부터 시행).

[p.400] 4. 청산종결등기의 수행 / 첫 번째 단락 /

청산종결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상등규 154조 1항, 116조 1항 4호). 청산종결의 등기로 본점등기기록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등기관은 그 회사의 지점등기기록을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다(상등규 154조 1항, 116조 2항).

->

청산종결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상등규 154조 1항, 116조).

[p.403] 등기예규 중 / 제7조

제7조(전산접수되지 않는 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

제2조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접수할 수 없는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 신청서의 접수에 관하여 준용한다[예: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등기소에 대하여 하는 변경등기의 신청서(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서를 제외한다)의 접수 등].

->

제7조(전산접수되지 않는 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

제2조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접수할 수 없는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 신청서의 접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p.410] 2. 등기기간 / (1) 등기기간 / 첫 번째 단락 /

흡수합병의 보고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변경의 등기,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528조 1항).

->

흡수합병의 보고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로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변경의 등기,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528조 1항; 2025. 1. 31.부터 시행).

[p.410] 2. 등기기간 / (3) 동시신청 / 첫 번째 단락 /

존속회사의 변경등기와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고, 소멸회사와 존속회사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해산등기 신청은 존속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를 거쳐야 한다(상등 63조 2항, 3항).

->

존속회사의 변경등기와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상등 63조 3항;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존속회사의 관할등기소와 다르더라도 해당 접수를 받은 존속회사의 관할등기소에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까지 함께 처리하므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존속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라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2025. 1. 31.부터 시행).

한편, 주식회사 흡수합병으로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합병으로 취득할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를 합병의 절차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와 동시에 진행한 합병의 등기와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원래 위 자기주식의 취득은 합병의 등기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절차도 합병의 등기 후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합병의 절차와 합병으로 취득할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합병의 등기와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다(상업선례 202211-1).

[p.410] (4) 등기사항 / (가) 존속회사 / 첫 번째 단락

(가) 존속회사 존속회사의 변경등기와 관련해서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본점과 합병을 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합병연월일(본점에서 합병등기를 한 날을 의미한다)도 등기하여야 한다(상등 62조 1항).

->

(가) 존속회사 존속회사의 변경등기와 관련해서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본점과 합병을 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상등 62조 1항; 2025. 1. 31.부터 시행).

[p.413] 주식회사 흡수합병 등기신청서(존속회사) 양식에서 /

|           |                                  |                                  |                                       |
|-----------|----------------------------------|----------------------------------|---------------------------------------|
| 본/지점 신청구분 | 1. 본점신청 <input type="checkbox"/> | 2. 지점신청 <input type="checkbox"/> | 3. 본·지점 일괄신청 <input type="checkbox"/> |
|-----------|----------------------------------|----------------------------------|---------------------------------------|

->

<삭제>

[p.415] 주식회사 흡수합병 등기신청서(소멸회사) 양식에서 /

|           |                                  |                                  |                                       |
|-----------|----------------------------------|----------------------------------|---------------------------------------|
| 본/지점 신청구분 | 1. 본점신청 <input type="checkbox"/> | 2. 지점신청 <input type="checkbox"/> | 3. 본·지점 일괄신청 <input type="checkbox"/> |
|-----------|----------------------------------|----------------------------------|---------------------------------------|

->

<삭제>

[p.418] 2. 등기절차 / (1) 등기기간 / 첫 번째 단락 /

신설합병의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합병 후 설립되는 회사에 있어서는 상법 317조에 정하는 등기(설립사항),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528조 1항).

->

신설합병의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로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528조 1항; 2025. 1. 31.부터 시행).

[p.418] (3) 동시신청 / 첫 번째 단락 /

신설회사의 설립등기와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고, 소멸회사와 신설회사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해산등기 신청은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를 거쳐야 한다(상등 63조 2항, 3항).

->

합병으로 인한 신설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과 소멸회사의 해산등기 신청은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상등 63조 3항;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신설회사의 관할등기소와 다르더라도 해당 접수를 받은 신설회사의 관할등기소에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까지 함께 처리하므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라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2025. 1. 31.부터 시행).

[p.418] (4) 등기사항 / (가) 신설회사 / 첫 번째 단락 /

(가) 신설회사     신설회사의 설립등기와 관련해서는, 상법 317조 2항에서 정하는 설립등기 사항 외에 소멸회사의 상호 및 본점과 합병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상등 62조 1항).

->

(가) 신설회사     신설회사의 설립등기와 관련해서는, 상법 317조 2항에서 정하는 통상의 설립등기사항 외에 소멸회사의 상호 및 본점과 합병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상등 62조 1항).

[p.420] IV. 등기소의 처리 /

<전부 교체>

->

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등기와 소멸회사의 등기를 접수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소멸회사의 해산 등기)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상업등기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각하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상등 64조; 2025. 1. 31.부터 시행).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상등규 154조 1항, 116조; 2025. 1. 31.부터 시행).

[p.423] ⑩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호) /

⑩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호)

->

⑩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호)

정관에서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기로 정하였다면 이사·감사와 마찬가지로 분할계획서에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분할신설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도 있다(상업선례 202307-1).

[p.425] 6. 창립총회 / 제목<수정> 및 4번째 단락<신설> /

6. 창립총회

<1,2,3번째 단락 변경없음; 표시 생략>

->

6. 창립총회 및 보고총회

<4번째 단락 신설>

한편 주식회사가 단순 분할 후 존속회사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분할에 관한 절차를 종료한 후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분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므로 분할존속회사의 보고총회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상법 530조의11 1항, 526조 1항 및 3항; 상업선례 202307-2).

[p.429] 1. 등기신청인 / 첫 번째 단락 /

분할신설회사의 설립등기와 분할존속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분할승계회사)의 변경등기는, 각 회사를 대표할 자 또는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상등 23조 1항). 다만,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상등 71조 1항).

->

분할신설회사의 설립등기와 분할존속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분할승계회사)의 변경등기는, 각 회사를 대표할 자 또는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상등 23조 1항). 다만,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상등 71조 1항; 2025. 1. 31.부터 시행).

[p.429] 2. 등기기간 / 첫 번째 단락 /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 종료일이나 흡수분할합병회사(분할승계회사)의 보고총회의 종료일, 또는 이들 총회에 갈음하는 공고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설립등기·변경등기·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530조의11 1항, 528조 1항).

->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 종료일이나 흡수분할합병회사(분할승계회사)의 보고총회의 종료일, 또는 이들 총회에 갈음하는 공고일로부터 2주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변경등기·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530조의11 1항, 528조 1항; 2025. 1. 31.부터 시행).

[p.430] 4. 동시신청 등 /

<전부교체>

->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분할신설회사·흡수분할합병회사·분할존속회사·분할소멸회사의 설립등기·변경등기·해산등기의 신청은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본점을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상등 71조 3항; 2025. 1. 31.부터 시행).

[p.431~p.433] 등기예규 및 관련선례 /

->

<전부 삭제>

[p.434] 2번째 단락 /

⑤ 상업등기규칙 129조 1호, 9호부터 11호까지의 서면(5호): ㉠ 정관(상등규 129조 1호. 공증인의 인증은 요하지 않음), ㉡ 신설회사의 창립총회의사록(상등규 129조 9호. 보고사항만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상등규 129조 10호), ㉣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상등규 129조 11호)

->

⑤ 상업등기규칙 129조 1호, 9호부터 11호까지의 서면(5호): ㉠ 정관(상등규 129조 1호. 공증인의 인증은 요하지 않음), ㉡ 신설회사의 창립총회의사록(상등규 129조 9호. 보고사항만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 분할존속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의 보고총회 의사록(보고사항만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상업선례 202307-2). ㉣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상등규 129조 10호), ㉤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상등규 129조 11호)

[p.435~p.436] 6. 등기소의 처리 /

<전부 교체>

->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분할신설회사·흡수분할합병회사·분할존속회사·분할소멸회사의 설립등기·변경등기·해산등기의 신청을 접수한 등기관(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본점을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의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상업등기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각하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상등 72조; 2025. 1. 31.부터 시행).

[p.436] V.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 / 첫 번째 단락 /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은 단순분할 또는 신설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신설회사의 설립등기를 한 때에,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는 흡수분할합병회사(분할승계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상 530조의11 1항, 234조. 등기가 효력발생요건임).

->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을 접수한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분할신설회사의 설립등기,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변경등기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상 530조의11 1항, 234조. 등기가 효력발생요건임; 2025. 1. 31.부터 시행).

[p.441] 분할준속회사의 변경등기 신청서(자본금감소의 경우) / 양식에서

|           |                                                                                                         |
|-----------|---------------------------------------------------------------------------------------------------------|
| 본/지점 신청구분 | 1. 본점신청 <input type="checkbox"/> 2. 지점신청 <input type="checkbox"/> 3. 본·지점 일괄신청 <input type="checkbox"/> |
|-----------|---------------------------------------------------------------------------------------------------------|

->

<삭제>

[p.447] (2) 등기기간 / 첫 번째 단락 /

주식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변경등기는 ‘주식교환을 할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주식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변경등기는 ‘주식교환을 할 날’로부터 2주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2025. 1. 31.부터 시행).

[p.449]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기 신청서(완전모회사) / 양식에서

|           |                                                                                                         |
|-----------|---------------------------------------------------------------------------------------------------------|
| 본/지점 신청구분 | 1. 본점신청 <input type="checkbox"/> 2. 지점신청 <input type="checkbox"/> 3. 본·지점 일괄신청 <input type="checkbox"/> |
|-----------|---------------------------------------------------------------------------------------------------------|

->

<삭제>

[p.452] (1) 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 첫 번째 단락 /

주식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등기는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주식 이전의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완전모회사의 설립등기의 등기사항은 통상의 설립등기의 등기사항이다(상 360조의20, 317조 2항).

->

주식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등기는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주식 이전의 날’로부터 완전모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완전모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완전모회사의 설립등기의 등기사항은 통상의 설립등기의 등기사항이다(상 360조의 20, 317조 2항; 2025. 1. 31.부터 시행).

[p.454] 주식의 포괄적 이전 등기신청서(완전모회사 설립) / 양식에서

|           |                                                                                                         |
|-----------|---------------------------------------------------------------------------------------------------------|
| 본/지점 신청구분 | 1. 본점신청 <input type="checkbox"/> 2. 지점신청 <input type="checkbox"/> 3. 본·지점 일괄신청 <input type="checkbox"/> |
|-----------|---------------------------------------------------------------------------------------------------------|

->

<삭제>

[p.458] 2. 등기절차 / (2) 등기기간 / 첫 번째 단락 /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  
서는 3주 내에,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606조).

->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주식회사  
의 해산등기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606조; 2025. 1. 31.부터 시행).

[p.461] 조직변경등기 신청서(유한회사의 설립등기) / 양식에서

|           |                                  |                                  |                                       |
|-----------|----------------------------------|----------------------------------|---------------------------------------|
| 본/지점 신청구분 | 1. 본점신청 <input type="checkbox"/> | 2. 지점신청 <input type="checkbox"/> | 3. 본·지점 일괄신청 <input type="checkbox"/> |
|-----------|----------------------------------|----------------------------------|---------------------------------------|

->

<삭제>

[p.463] 조직변경등기 신청서(주식회사 해산등기) / 양식에서

|           |                                  |                                  |                                       |
|-----------|----------------------------------|----------------------------------|---------------------------------------|
| 본/지점 신청구분 | 1. 본점신청 <input type="checkbox"/> | 2. 지점신청 <input type="checkbox"/> | 3. 본·지점 일괄신청 <input type="checkbox"/> |
|-----------|----------------------------------|----------------------------------|---------------------------------------|

->

<삭제>

[p.465] 등기예규 중에서 / 제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4.04.24 [등기예규 제1518호, 시행 2014.04.2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4.04.04 [등기예규 제1777호, 시행 2024.04.04]

[p.467] 등기예규 중에서 / 제8조 /

<전부 교체>

->

제8조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 법원사무관등이 법 제23조, 법 제25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등기 등 회생절차·파산절차·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②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법 제20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 감소, 제265조 및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7조 및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이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 외에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p.468] 등기예규 중에서 / (제10조) 2번째 단락, 3번째 단락 /

<전부교체>

->

② 법원이 법 제74조제3항 본문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법인인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 결정이 취소 또는 변경된 때에도 같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촉탁서에는 등기의 목적, 등기의 원인 및 그 일자, 그 결정(허가)를 한 법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관리인, 관리인대리에 관한 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는 관리인, 관리인대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단,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에 대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때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p.468] 등기예규 중에서 / 제12조 / 첫 번째 단락 /

<전부 교체>

->

① 법 제205조에 의한 자본 감소, 제265조 및 제266조에 의한 신주발행, 제267조 및 제268조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의 등기, 기타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종료 전에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경우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p.470] 등기예규 중에서 / 부칙 /

부 칙(2014.04.24 제1518호)

이 예규는 2014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삭제>

[p.470] 2. 등기절차 / 첫 번째 단락 /

설립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상 328조 2항, 192조).

->

설립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상 328조 2항, 192조; 2025. 1. 31.부터 시행).

[p.471] 2. 등기절차 / (1) 등기사항 / 첫 번째 단락 /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상 378조, 380조). 창립총회결의 취소판결,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판결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상 378조, 380조; 2025. 1. 31.부터 시행). 창립총회결의 취소판결,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판결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p.472] (2) 등기의 촉탁 / 2번째 단락 /

만약 관할외 본점이전등기를 한 후 주주총회에서 한 본점이전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본점이전결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에 따른 등기의 촉탁은 신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할 것이다(등기예규 751호; 상업선례 1-132).

->

만약 관할외 본점이전등기를 한 후 주주총회에서 한 본점이전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본점이전결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에 따른 등기의 촉탁은 새 본점의 소재지 등기소에 할 것이다(등기예규 751호; 상업선례 1-132; 2025. 1. 31.부터 시행).

[p.474] 2. 등기절차 / 첫 번째 단락 /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 가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하고(상 407조 3항, 415조, 415조의2 6항, 542조 2항), ~~(이하 변경없음 / 표시생략)~~

->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 가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하고(상 407조 3항, 415조, 415조의2 6항, 542조 2항; 2025. 1. 31.부터 시행), ~~(이하 변경없음 / 표시생략)~~

[p.478] V. 일시이사 등의 등기 / 2. 등기절차 / 2번째 단락 /

일시이사 등의 직무를 행할 자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및 재판연월일을 기록한다(상등규 55조 2항). 일시대표이사, 일시대표청산인의 경우에는 일반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지점소재지에서도 등기한다.

->

일시이사 등의 직무를 행할 자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및 재판연월일을 기록한다(상등규 55조 2항).

[p.478] VI. 합병무효의 등기 / 2. 등기절차 / 첫 번째 단락 /

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회복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530조 2항, 238조).

->

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회복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530조 2항, 238조; 2025. 1. 31.부터 시행).

[p.479] VII. 분할 또는 분할합병 무효의 등기 / 2. 등기절차 / 첫 번째 단락 /

분할·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한 회사의 변경등기,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회복등기,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530조의11 1항, 238조).

->

분할·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한 회사의 변경등기,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회복등기,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530조의11 1항, 238조; 2025. 1. 31.부터 시행).

[p.480] VII.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 무효의 등기 / 2. 등기절차 / (1) 주식교환 무효의 경우 / 첫 번째 단락 /

주식교환 무효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의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360조의14, 192조).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에 관하여는 등기할 사항은 없다.

->

주식교환 무효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의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360조의14, 192조; 2025. 1. 31.부터 시행).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에 관하여는 등기할 사항은 없다.

[p.481] (2) 주식이전 무효의 경우 / 첫 번째 단락 /

주식이전 무효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의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360조의23 4항, 192조).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에 관하여는 등기할 사항은 없다.

->

주식이전 무효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의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360조의23 4항, 192조; 2025. 1. 31.부터 시행).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에 관하여는 등기할 사항은 없다.

[p.488] II. 등기절차 / 2. 등기사항에 추가

<추가>

->

⑧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본점 또는 지점에 지배인을 둔 때에는 ㉠ 지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지배인을 둔 장소, ㉢ 2명 이상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규정(상 13조,12조; 상등 50조,51조; 본점 및 지점 지배인 모두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서 등기한다; 2025. 1. 31.부터 시행)

[p.490] 유한회사 등기부 기재례

|      |        |    |      |         |
|------|--------|----|------|---------|
| 등기번호 | 002314 | -> | 등기번호 | 0023143 |
|------|--------|----|------|---------|

[p.491]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 / 양식에서

|           |                                                                                                         |
|-----------|---------------------------------------------------------------------------------------------------------|
| 본/지점 신청구분 | 1. 본점신청 <input type="checkbox"/> 2. 지점신청 <input type="checkbox"/> 3. 본·지점 일괄신청 <input type="checkbox"/> |
|-----------|---------------------------------------------------------------------------------------------------------|

->

<삭제>

[p.500] 제7절 해산 및 청산인에 관한 등기 / 2. 등기절차의 1번째 단락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해산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613조 1항, 228조).

->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해산한 날로부터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613조 1항, 228조; 2025. 1. 31.부터 시행).

[p.505] II. 등기절차의 2번째 단락

청산종결의 등기는 사원총회의 결산 보고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상 613조 1항, 264조).

->

청산종결의 등기는 사원총회의 결산 보고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상 613조 1항, 264조; 2025. 1. 31.부터 시행).

[p.508] III. 등기절차

#### 1. 등기기간 및 등기신청인

흡수합병의 경우 보고총회가 종결한 날, 신설합병의 경우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602조).

->

흡수합병의 경우 보고총회가 종결한 날, 신설합병의 경우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부터,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602조, 528조, 233조; 2025. 1. 31.부터 시행).

## 2. 동시신청 및 경유신청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존속회사(흡수합병의 경우)의 변경등기 또는 신설회사(신설합병의 경우)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상등 63조 3항). 본 등기신청은 그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이 없을 때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상등 63조 2항).

->

## 2. 동시신청

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신설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과 소멸회사의 해산등기 신청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상등 63조 3항;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관할등기소와 다르더라도 해당 접수를 받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관할등기소에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까지 함께 처리하므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라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2025. 1. 31.부터 시행).

## 3. 등기사항

### (1) 존속회사의 등기사항

합병으로 인하여 자본금의 총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의 내용을 등기하고, 소멸회사의 상호·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지점 소재지에서는 소멸회사의 상호·본점과 합병을 한 뜻 및 합병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상등 62조 1항).

-><일부삭제>

합병으로 인하여 자본금의 총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의 내용을 등기하고, 소멸회사의 상호·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상등 62조 1항).

### (2) 신설회사의 등기사항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유한회사의 통상의 설립등기사항(상 602조, 549조 2항) 외에, 소멸회사의 상호·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지점 소재지에서는 소멸회사의 상호·본점과 합병을 한 뜻 및 합병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상등 62조 1항).

-> <일부 삭제>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유한회사의 통상의 설립등기사항(상 602조, 549조 2항) 외에, 소멸회사의 상호·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상등 62조 1항).

[p.510] IV. 합병의 효과 위에 <추가>

<추가>

->

#### 5. 등기관에의 처리

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등기와 소멸회사의 등기를 접수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소멸회사의 해산 등기)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상업등기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각하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상등 64조; 2025. 1. 31.부터 시행).

[p.510] IV. 합병의 효과/ 1. 합병의 효력발생시기의 1번째 단락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합병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상 603조, 234조).

->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합병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상 603조, 234조).

[p.511] II. 등기절차 / 1. 등기기간 등의 1번째 단락

채권자보호절차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를,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상법 317조 2항에 정하는 등기(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607조 5항, 606조).

->

채권자보호절차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를,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상법 317조 2항에 정하는 등기(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607조 5항, 606조; 2025. 1. 31.부터 시행).

[p.513] I.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의 등기의 2번째 단락

유한회사의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1심 수소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본점 및 지점소재지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하고(상 552조 2항, 192조, 193조; 비송 98조, 107조 2호), 이 경우 촉탁서에 설립무효·취소의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비송 108조).

->

유한회사의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1심 수소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하고(상 552조 2항, 192조, 193조; 비송 98조, 107조 2호; 2025. 1. 31.부터 시행), 이 경우 촉탁서에 설립무효·취소의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비송 108조).

[p.519] II. 등기절차 / 2. 등기사항에 추가

<추가>

->

⑦ 설립시부터 본점 또는 지점에 지배인을 둔 때에는 ㉠ 지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지배인을 둔 장소, ㉢ 2명 이상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규정(상 13조,12조; 상등 50조,51조; 본점 및 지점 지배인 모두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서 등기한다; 2025. 1. 31.부터 시행)

[p.521] 합명회사 등기부 기재례

|      |        |    |      |         |
|------|--------|----|------|---------|
| 등기번호 | 001234 | -> | 등기번호 | 0012343 |
|------|--------|----|------|---------|

[p.522] 합명회사 설립등기신청서 / 양식에서

|           |                                                                                                         |
|-----------|---------------------------------------------------------------------------------------------------------|
| 본/지점 신청구분 | 1. 본점신청 <input type="checkbox"/> 2. 지점신청 <input type="checkbox"/> 3. 본·지점 일괄신청 <input type="checkbox"/> |
|-----------|---------------------------------------------------------------------------------------------------------|

-> <삭제>

[p.527] (7)제명의 2번째 단락

사원의 제명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본점 및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촉탁서에는 사원의 제명판결의 등본을 첨부)(비송 107조 3호, 108조).

->

사원의 제명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본점소재지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촉탁서에는 사원의 제명판결의 등본을 첨부)(비송 107조 3호, 108조; 2025. 1. 31.부터 시행).

[p.529] IV. 등기절차 / 1. 등기기간 등 / 첫 번째 단락

사원·대표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 지점소재지<sup>2)</sup>에서는 3주간 내에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등 183조). 다만, 사원의 제명 또는 그 업무집행권한이나 대표권 상실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이 그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한다(비송 107조 3호, 108조).

[각주] 2)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사항은 대표권 있는 사원에 한함(상등 181조 2항 단서).

->

사원·대표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183조; 2025. 1. 31.부터 시행). 다만, 사원의 제명 또는 그 업무집행권한이나 대표권 상실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이 그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본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한다(비송 107조 3호, 108조; 2025. 1. 31.부터 시행).

[각주] <삭제>

[p.538] II. 등기절차 / 1. 등기신청인 등 / 첫 번째 단락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선임된 날로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청산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253조).

->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선임된 날로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청산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253조; 2025. 1. 31.부터 시행).

[p.540] II. 등기절차 / 1. 등기기간 등 / 첫 번째 단락

회사를 계속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229조 3항).

->

회사를 계속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229조 3항; 2025. 1. 31.부터 시행).

[p.543] II. 등기절차 / 1. 등기기간 등 / (1) 임의청산의 경우 / 첫 번째 단락

회사재산의 처분을 완료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 247조 5항, 상등 23조 1항).

->

회사재산의 처분을 완료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 247조 5항, 상등 23조 1항; 2025. 1. 31.부터 시행).

[p.544] 첫 번째 단락

(2) 법정청산의 경우

청산인이 총사원으로부터 계산서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 264조).

->

(2) 법정청산의 경우

청산인이 총사원으로부터 계산서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 264조; 2025. 1. 31.부터 시행).

[p.545] II. 등기절차 / 1.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

(1)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

존속하는 합병회사의 변경등기는 합병절차(채권자보호절차 기타 합병에 필요한 절차)의 완료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상 233조), 존속하는 합병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한다(상등 23조 1항).

존속하는 합병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상등 63조 1항, 3항).

->

(1)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

존속하는 합병회사의 변경등기는 합병절차(채권자보호절차 기타 합병에 필요한 절차)의 완료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상 233조; 2025. 1. 31.부터 시행), 존속하는 합병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한다(상등 23조 1항).

존속하는 합병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도 신청하여야 한다(상등 63조 1항).

존속회사 변경등기의 신청과 소멸회사 해산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 본점소재지의 관할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상등 63조 3항).

[p.546] 3번째 단락

③ 지점소재지에서는 합병연월일(상등 62조 1항 후단):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소멸회사의 상호 및 본점과 합병을 한 뜻 외에 합병연월일도 등기한다.

->

<삭제>

[p.546] 2. 신설회사의 설립등기

합병으로 신설되는 합병회사의 설립등기는 합병절차(채권자보호절차 기타 합병에 필요한 절차)의 완료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상 233조), 신설되는 합병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한다(상등 23조 1항).

신설되는 합병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상등 63조 1항, 3항).

->

합병으로 신설되는 합병회사의 설립등기는 합병절차(채권자보호절차 기타 합병에 필요한 절차)의 완료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상 233조; 2025. 1. 31.부터 시행), 신설되는 합병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한다(상등 23조 1항).

신설되는 합병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도 신청하여야 한다(상등 63조 1항).

신설회사 설립등기의 신청과 소멸회사 해산등기의 신청은 신설회사 본점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상등 63조 3항).

[p.547] 3. 소멸회사의 해산등기 / (1)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 3번째 단락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이 없을 때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상등 63조 2항).

-> <삭제>

[p.547] 3. 소멸회사의 해산등기 / (1)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 4번째 단락  
등기기간은 합병절차(채권자보호절차 기타 합병에 필요한 절차)의 완료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 지점소재지에서 3주 내이다(상 233조).

->

등기기간은 합병절차(채권자보호절차 기타 합병에 필요한 절차)의 완료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일 내이다(상 233조; 2025. 1. 31.부터 시행).

[p.548] 제11절 조직변경의 등기 / II. 등기절차 / 1. 등기기간 등 / 첫 번째 단락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합병회사의 해산등기와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243조).

->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병회사의 해산등기와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243조; 2025. 1. 31.부터 시행).

[p.554] 합자회사 등기부 기재례

|      |        |    |      |         |
|------|--------|----|------|---------|
| 등기번호 | 001234 | -> | 등기번호 | 0012343 |
|------|--------|----|------|---------|

[p.555] 합자회사 설립등기신청서 / 양식에서

|           |                                  |                                  |                                       |
|-----------|----------------------------------|----------------------------------|---------------------------------------|
| 본/지점 신청구분 | 1. 본점신청 <input type="checkbox"/> | 2. 지점신청 <input type="checkbox"/> | 3. 본·지점 일괄신청 <input type="checkbox"/> |
|-----------|----------------------------------|----------------------------------|---------------------------------------|

-> <삭제>

[p.564] 제10절 조직변경의 등기 / II. 등기절차 / 1. 등기사항, 등기기간 등 / 첫 번째 단락

합자회사가 합병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합자회사의 해산등기와 합병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286조 3항).

->

합자회사가 합병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자회사의 해산등기와 합병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286조 3항; 2025. 1. 31.부터 시행).

[p.571] 2. 등기사항 / <추가>

<추가>

->

⑨ 설립시부터 본점 또는 지점에 지배인을 둔 때에는 ㉠ 지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지배인을 둔 장소, ㉢ 2명 이상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규정(상 13조, 12조; 상등 50조, 51조; 본점 및 지점 지배인 모두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서 등기한다; 2025. 1. 31.부터 시행)

[p.572] 제3절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 첫 번째 단락

설립등기의 등기기간은 제한이 없지만, 유한책임회사의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287조의5 4항).

->

설립등기의 등기기간은 제한이 없지만, 유한책임회사의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287조의5 4항; 2025. 1. 31.부터 시행).

[p.574] III. 등기절차 / 1. 신청인과 등기기간 등 / 마지막 단락

(대표)업무집행자가 변경되거나 업무집행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 287조의5 4항; 상등 23조 1항).

->

(대표)업무집행자가 변경되거나 업무집행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 287조의5 4항; 상등 23조 1항; 2025. 1. 31.부터 시행).

[p.577] 제6절 해산의 등기 / 2번째 단락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유한책임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회사를 대표하는 자(대표청산인<sup>1)</sup>)가 그 해산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해산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 287조의39).

->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유한책임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회사를 대표하는 자(대표청산인<sup>1)</sup>)가 그 해산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해산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 287조의39; 2025. 1. 31.부터 시행).

[p.581] II. 등기절차 / 1. 등기기간 및 등기신청인 / 첫 번째 단락

회사가 합병을 한 때(채권자보호절차 등 합병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합병 후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신설회사의 설립등기와 합병 후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287조의41, 233조).

->

회사가 합병을 한 때(채권자보호절차 등 합병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병 후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신설회사의 설립등기와 합병 후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287조의41, 233조; 2025. 1. 31.부터 시행).

[p.582]

## 2. 동시신청 및 경유신청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시에는 존속회사의 변경등기(흡수합병의 경우) 또는 신설회사의 설립등기(신설합병의 경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고(상등 63조 3항), 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이 없는 때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상등 63조 2항).

->

## 2. 동시신청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와 존속회사의 변경등기(흡수합병의 경우) 또는 신설회사의 설립등기(신설합병의 경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상등 63조 3항).

[p.599~p.600] 전면 교체

<전면교체>

->

## II. 등기절차

### 1.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의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상등 23조 3항).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일로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614조 2항; 2025. 1. 31.부터 시행). 다만,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등기기간은 그 통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상 615조).

### 2. 등기사항

#### (1) 개설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등기에는 다음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상 614조 2항, 3항; 2025. 1. 31.부터 시행).

##### ① 목적

##### ② 상호

③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로 한다)

④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⑤ 본점의 소재지

⑥ 영업소의 소재지(다른 영업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⑦ 회사의 존립기간 내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⑧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본국에서의 공고방법 및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

⑨ 회사설립의 준거법

⑩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로 한다)

(2) 세부내용

(가) 외국회사의 상호 외국회사의 상호는,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에 한글 등으로 기재한 상호가 없더라도 당해 외국회사의 본국에서의 발음(원지음)대로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등기한다. 다만, 상호의 비주요 부분(회사의 종류나 업종을 표시하는 부분 등)에 관하여는 의미상 동일성이 있는 한글 단어로 등기할 수 있다(등기예규 1598호 10조 1항).

외국회사의 영업소 등기에서 상호에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주식, 유한, 합명, 합자회사)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회사의 상호도 신청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후 괄호 안에 한자, 로마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를 병기할 수 있다(상등규 2조 단서).

(나) 외국회사의 목적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등기시 기록하여야 할 영업목적은 외국회사가 행하는 사업목적으로, 당해 외국회사가 한국 내에서 행하는 사업목적에 한정하지 않고 모두 등기한다.

(다) 회사설립의 준거법 회사설립의 준거법은 외국회사가 현재 준거로 하고 있는 법률을 의미하고, 설립 당시에 준거로 삼았던 법률을 의미하지 않는다.

(라) 외국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은 상법상 주식회사의 공고방법을 따라야 한다(상 616조의2 1항).

(마)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등 자본에 관한 사항은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등기 시에 등기사항이 아니다(상업선례 202304-1).

[p.601] 3. 첨부서면 /

④ 외국회사와 동종·가장 유사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면(4호)

->

④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면(4호)

[p.602] 외국 주식회사의 영업소 등기기재례

|      |        |    |      |         |
|------|--------|----|------|---------|
| 등기번호 | 001122 | -> | 등기번호 | 0011223 |
|------|--------|----|------|---------|

|                                                                                                        |
|--------------------------------------------------------------------------------------------------------|
| 임원에 관한 사항<br>대표이사 미합중국인 윌리엄 제퍼슨 미합중국 뉴욕주 뉴욕시 스테이트<br>가 10<br>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김○○ 1955. 10. 1생 서울 종로구 평창로 ○ |
|--------------------------------------------------------------------------------------------------------|

->

|                                                                                                                        |
|------------------------------------------------------------------------------------------------------------------------|
| 임원에 관한 사항<br>대표이사 미합중국인 윌리엄 제퍼슨 1960년 12월 14일생 미합중국 뉴<br>욕주 뉴욕시 스테이트가 10<br>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김○○ 551001-1***** 서울 종로구 평창로 ○ |
|------------------------------------------------------------------------------------------------------------------------|

[p.603] 제3절 영업소의 변경등기 / I. 등기사항, 등기기간 등 /

<전부 교체>

->

I. 등기사항, 등기기간 등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일 내에 종전 소재지에서는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  
일’을, 새 소재지에서는 ‘영업소 설치의 등기사항(상 614조 2항,3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상  
614조의2 1항; 2025. 1. 31.부터 시행).

그 외의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영업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 614조의2 2항; 2025. 1. 31.부터 시행).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등기기간의 기산점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가 된다(상  
615조).

[p.613] 제목 아래

개정 2014.10.02. [규칙 제2560-1호, 시행 2014.11.21.]

-> [시행 2025.01.31.]

[p.614]

제5조 ② ~ 그 대리인을 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

->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조 ① ~ 제6조 ~ -> 제7조의2

② ~ 제101조, ~ -> <삭제>

③ ~ 제154조 제3항·제4항 ~ -> 제154조 제4항 <제3항 삭제>

④ ~ 「상업등기규칙」 제88조 ~ -> 「상업등기규칙」 제7조, 제88조

제7조 ~ 2022년까지 ~ -> ~ 2032년까지 ~

부칙 -> <모두 삭제>

[p.616] 박스 아래

한편,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과 ~

-> 한편,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과

[p.620] 2번째 단락

다만, ~ 2022년까지 ~ -> 다만, ~ 2032년까지

[p.632] 사단법인 등기부 기재례

|      |        |
|------|--------|
| 등기번호 | 001122 |
|------|--------|

 -> 

|      |         |
|------|---------|
| 등기번호 | 0011223 |
|------|---------|

[p.633] 재단법인 등기부 기재례

|      |        |
|------|--------|
| 등기번호 | 001122 |
|------|--------|

 -> 

|      |         |
|------|---------|
| 등기번호 | 0011223 |
|------|---------|

[p.634] II. 사무소이전등기 / 1번째 단락 /

민법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 사무소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법인 소정의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민 49조, 51조).

->

민법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민51조 1항; 2025. 1. 31.부터 시행).

[p.634~635] 선례 ‘정관 변경없이 종료된 주사무소 이전등기의 효력’ 중 /

2. 신·구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이하, ‘신 등기소’, ‘구 등기소’라 하는데, 주사무소이전 등기시의 신·구 등기소를 말한다)가 다른 경우, 주사무소이전등기 말소 신청의 절차와 방법, 그 처리는 주사무소이전등기의 경우(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2항, 제184조, 제185조)에 준한다.

1) 신·구 등기소에서 할 주사무소이전등기 말소의 신청서와 구 등기소에 제출할 인감은 신 등기소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신 등기소에서 할 주사무소이전등기 말소의 신청서에는 주사무소이전등기에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제23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예를 들어, 정관 변경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은 채 정관을 위반하여 주사무소를 이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3) 신 등기소의 등기관은 각하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구 등기소에서 할 주사무소이전등기 말소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과 인감을 구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4) 구 등기소의 등기관은 등기용지를 부활하여 주사무소이전등기를 말소한 때 또는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신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등기소의 등기관은 구 등기소의 등기관으로부터 주사무소이전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는 신 등기소 등기용지의 주사무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서는 안 된다.

-> <삭제>

[p.635] III. 분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등기

민법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법인의 등기사항(민 49조 2항)을 등기하며,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도 같은 기간 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민 50조 1항). 다만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위 기간 내에 분사무소의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민 50조 2항).

한편, 민법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사무소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법인 소정의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민 49조, 51조).

->

민법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민 50조; 2025. 1. 31.부터 시행).

한편, 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민 51조 2항; 2025. 1. 31.부터 시행).

[p.636] IV. 명칭 또는 목적의 변경 등기 앞 단락

한편, 특수법인의 경우, 당해 특별법령에 따라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일 내에 그 대리인을 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리인을 둔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민등규 5조 2항).

->

한편, 특수법인의 경우 ①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둘 수 있는지 여부가 모두 당해 특별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무법인은 ① 세무사법에서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하므로 분사무소를 둘 수 있고 이를 등기하여야 하지만, ② 상인에 해당하지 않고 세무사법에 지배인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세무법인의 지배인은 이를 두더라도 등기사항이 아니다(상업선례 202212-2).

[p.639] 1. 개설 / 2번째 단락 /

한편, 민법법인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서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으나(민 66조), 이를 둔 경우에도 등기사항은 아니다(민 49조 2항). 그러나, 특수법인 중 농업협동조합, 정비사업조합,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감사가 등기사항인 경우도 있다.

->

한편, 민법법인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서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으나(민 66조), 이를 둔 경우에도 등기사항은 아니다(민 49조 2항). 그러나, 특수법인 중 농업협동조합, 정비사업조합, 세무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감사가 등기사항인 경우도 있다.

[p.644] 2번째 단락 (다) 직무대행자 중 /

민법법인의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민 52조의2).

->

민법법인의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민 52조의2; 2025. 1. 31.부터 시행).

[p.644] 3. 감사의 등기 앞 단락 <신설> /

<신설>

->

(라) 이사 권리의무행사자

민법법인의 이사가 임기 만료 또는 사임의 사유로 퇴임하여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 만료 또는 사임된 종전 이사에게 이사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상법 상 회사의 이사 권리의무행사자와 같은 개념이 인정됨).

다만, 당연직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사의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당연직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정관에서 정한 자격을 상실하고 퇴임하여 비록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에 결한다고 하더라도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직 이사의 퇴임등기만의 신청이 가능하다(상업선례 202404-1).

[p.645] ‘제4절 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의 ‘2. 등기절차’ 중에서 1번째 단락

민법법인의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민 85조 1항; 비송 62조).

->

민법법인의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민 85조 1항; 비송 62조; 2025. 1. 31.부터 시행).

[p.654] 3. 부동산등기법의 준용(비송 71조) 중 1번째 단락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1호~제3호까지, 제6조, 제8조~제13조까지, 제14조 제2항~제4항까지, 제16조~제20조까지, 제22조,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9조 제1호~제5호까지 및 제8호~제10호까지, 제31조~제33조까지, 제58조, 제100조~제109조까지 및 제113조를 준용한다.

->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1호~제3호까지, 제6조, 제8조~제13조까지, 제14조 제2항~제4항까지, 제16조~제20조까지, 제22조,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9조 제1호~제5호까지 및 제8호~제10호까지, 제31조~제33조까지, 제58조, 제100조,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02조~제107조까지, 제109조의2 제1항·제3항(제1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13조를 준용한다(2025. 1. 31.부터 시행).

특히,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하는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전자이의신청,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규정은 준용되지 않음에 주의한다.

[p.699] III. 비교개념: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 중 3번째 단락 /

한편,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하고(민 52조의2), 이 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한다(민집 306조).

->

한편,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하고(민 52조의2; 2025. 1. 31.부터 시행), 이 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한다(민집 306조).

[p.759] V. 해산재판의 등기촉탁 중 1번째 단락

회사의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해산한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비송 93조).

->

회사의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해산한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비송 93조; 2025. 1. 31.부터 시행).

[p.774] 마지막 단락

청산인의 선임결정이 있으면 그 선임된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청산인의 선임에 대한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상 253조 1항, 269조, 542조 1항, 613조 1항), 이는 대표청산인이 신청한다.

->

청산인의 선임결정이 있으면 그 선임된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청산인의 선임에 대한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상 253조 1항, 269조, 542조 1항, 613조 1항; 2025. 1. 31.부터 시행), 이는 대표청산인이 신청한다.

[p.775] 1번째 단락

이에 반하여 청산인의 해임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비송 107조 5호).

->

이에 반하여 청산인의 해임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비송 107조 5호; 2025. 1. 31.부터 시행).

[p.791] 색인 / <예규번호 수정>

등기예규 1518호 -> 등기예규 1777호

등기예규 1761호 -> 등기예규 1774호

등기예규 1763호 -> 등기예규 1776호